

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037-10

www.acrc.go.kr

2012

부패·공익침해 방지 심의·의결례집

제11집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발 간 사 |



과학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 우리는 한 개인이나 기업의 행위가 지역과 국가의 구성원은 물론 국경을 넘어서까지 다른 사람의 이익과 안위에 영향을 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저지르는 불법적인 행위들로 인한 피해의 범위와 강도는 과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영세민에 돌아갈 보조금을 횡령하는 행위는 지역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부실 도로공사는 내 가족을 포함한 이웃의 생명을 앗아갈지도 모르며,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나쁜 재료를 사용한 불량식품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까지도 해칩니다.

이에 따라, 부패와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일은 한때 ‘고자질’이나 ‘배신’으로 폄하되기도 하였지만 이제 ‘건강한 시민 의식의 발로’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타고 있는 공동체라는 배가 누군가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침몰 위기에 놓인다면 이를 먼저 발견한 누구라도 호루라기를 불어 구성원들이 그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2002년 과거 「부패방지법」(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부패신고와 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을 부패방지의 주체로 인정하는 선진국형 부패방지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우리 위원회 주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건강, 안전 그리고 환경 등 주로 민간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와 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이제는 명실상부한 선진국형 시민 감시 제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패와 공익침해 신고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과거의 부정적 경향에서 벗어나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부패·청렴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 의식이 부패 예방과 적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렵게 도입된 이 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부패·공익침해 방지 심의·의결례집’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발벗고 나선 시민들의 분투에 관한 기록으로서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값진 자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주신 신고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기록집이 우리 사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2013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 성 보



2012년도 부패·공익침해 방지 심의·의결례집 (제11집)

일러두기

「2012년 부패·공익침해 방지 심의·의결례집」은 부패 및 공익침해 신고에 대한 심의·의결 사례를 정리하여 수록한 책자로서 공직자들의 반부패 업무활용에 도움을 주고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사회,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심의·의결사항을 상정순서에 따라 수록하였고 부패신고사건, 공익침해 신고사건,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금 지급 등 안건을 분야별로 요약하여 수록하였으며 보고사항은 위원회 내부업무 관련 사항 및 의결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의 사안으로 목차만 수록하였습니다.

본 심의·의결례집의 신고사건 등의 자료는 부패 및 공익침해 신고에 대한 신고자 진술, 참고인 진술, 증거자료 수집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이며, 신고자의 보호와 피신고자에 대한 선의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체적인 인명과 기관명을 제외하였습니다.

특히, 본 책자에 수록된 사례에 대하여는 권한 있는 기관의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본 사례를 임의 판단하여 특정인이나 기관을 비방하거나, 폄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CONTENTS

제1장 부패 신고사건

[2012년 부패신고 사건]

01. 누룽지기계 설치 관련 공사비 편취 의혹	5
02. 체육회 관계자의 대회 지원금 횡령 의혹	6
03. 국책과제 정부지원금 횡령 의혹	7
04. 국가필수 국제선박 손실보상금 허위 청구 의혹 등	8
05. 연구·지도직 공무원 호봉확정 과다로 예산낭비 의혹	9
06. 젓갈 명산품 육성사업 사업비 편취 의혹	10
07. 석등 및 환경개선공사 보조금 횡령 의혹	11
08. 하천 개수공사비 부당 편취 의혹	12
09. 무용학과 교수 공연료 등 편취 의혹	13
10.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횡령 의혹	14
11. 내수면담당 공무원의 금품수수 의혹 등	15
12. 조달물품 납품 관련 부패행위 의혹	16
13. 체육교사 금품수수 의혹	17
14. 인구주택 총조사 출장여비 횡령 의혹	18
15. 연구원 호봉확정 비리 의혹 등	19
16. 하천정비 공사비 부당편취 의혹	20
17. 외국인 선원 송·출입 업무 관련 비리 의혹	21
18. 국책연구개발 관련 정부지원금 횡령 의혹 등	22
19. 해외취업연수 관련 공단지원금 편취 의혹	23
20. 국유지 불법취득에 의한 국가예산 손실 등	24
21. 하천부지 무단점용에 따른 공공기관 재산손실 의혹	25
22. 임목폐기물 운송중량 조작·처리비용 편취 의혹	26
23. 경찰관 직권남용 등 의혹	27



CONTENTS

24. 도선운용 지원금 횡령 의혹 등	28
25. 도청의 주방기자재 설치공사 입찰비리 의혹	29
26. 허위등록 영업용 화물차 불법 변경 등록을 통한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	30
27. 영업용 화물차 불법 변경 등록을 통한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	31
28.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부당 편취 의혹	32
29. 요양병원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등 부당청구 의혹	33
30. 군용물품 무단폐기 의혹	34
31.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 위장전입 비리 의혹 등	35
32. 산사태 공사비용 부당청구 의혹	36
33. ○○연구원 팀장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 등	37
34. 기성공사대금 과다청구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 의혹 등	38
35. 영업용 화물차 불법변경 등록을 통한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	39
36. ○○대학교 예산낭비 의혹 등	40
37. ○○대학교수 연구비 횡령 및 금품수수 의혹 등	41
38.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출연금 편취 등 의혹	42
39.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부당청구 의혹	43
40.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 위장전입 비리 의혹	44
41.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법 위반 및 보통 교부세 부정 교부 의혹	45
42. ○○공단 직원의 보조공학기기 납품 관련 금품 및 리베이트 등 수수 의혹	46
43. 장애인 고용장려금 편취 의혹	47
44. 군부대 도로 포장공사 골재비 편취 의혹	48
45. 농로 포장공사 관리·감독 소홀 및 특혜 의혹	49
46. 교통안전시설물 허위 납품으로 국가예산 편취 의혹 등	50
47. 국립대학교 교수채용 비리 의혹 등	51
48. ○○학교장 뇌물수수 및 공용물 편취 의혹 등	52
49.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 편취 의혹	53

50. 아동양육시설 국가보조금 편취 및 금품수수 의혹 등	54
51. 지방자치단체 민간자본 유치사업 관련 비리 의혹	55
52.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비 편취 등 의혹	56
53. 공기업 간부의 ICT사업 관련 입찰방해 등 부패행위 의혹	57
54.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국가예산 낭비 및 편취 의혹	58
55. 교육청 공무원의 예산횡령 의혹 등	59
56. 공유수면 매립공사 공사비 부당편취 등 의혹	60
57.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편취 등 의혹	61
58. 공립어린이집 원장 보조금 편취 의혹	62
59. 사회단체 보조금 횡령 의혹	63
60. 장애인 심부름센터장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 의혹 등	64
6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	65
62.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의 특정업체 특혜 부여 의혹	66
63. 지방이전기업유치 정부지원금 편취 의혹 등	67
64. ○○시 여성합창단연합회 보조금 횡령 의혹	68
65. 지방자치단체 청소차량 감가상각비용 과다 산정 의혹	69
66. 다기능 행정선 선박 건조비 횡령 의혹	70
67. 직업전문학교 청년취업 인턴제 국고보조금 편취 의혹	71
68.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의혹	72
69. 민간업체의 해외취업 연수사업 교육훈련비 편취 의혹	73
70.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	74
71. 4대강살리기사업 입찰담합행위 조사관련 부패행위 의혹	75
72. 관급공사 공사비 편취 의혹	76
73. 검찰공무원 직무관련 뇌물수수 의혹	77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01.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관련 연구비 편취 의혹	81
--------------------------------------	----



CONTENTS

02. 영어체험마을사업 관련 예산손실 특혜 의혹	82
03. ○○전차 엔진개발 정부지원금 편취 의혹 등	83
04. 영화체험마을 사업비 등 보조금 편취 의혹	84
05. 장기요양급여비 편취 및 감독관 묵인 의혹	85
06. 제약회사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약제비) 편취 의혹	86
07. 군수 가족묘 진입로 공사 관련 예산낭비 의혹	87
08. ○○스타디움 전광판 교체사업 관련 비리 의혹	88
09.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비 횡령 의혹	89
10. 기부채납 토지 등기미필 공무원의 직무 유기 등 의혹	90
11. 문화축제 행사 보조금 횡령 등 의혹	91
12. 수도사업소 타일 납품 관련 비리 의혹	92
13. 열차부품 납품 관련 공공기관 예산편취 등 의혹	93
14. 해양플랜트 연구개발 사업 관련 정부지원금 횡령 의혹 등	94
15. ○○보증기금 직원의 기술평가 관련 뇌물수수 의혹	95
16.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공무원 알선수뢰 등 의혹	96
17. ○○중앙회 직원 업무추진비 횡령 등 의혹	97
18. 모타카 운전 및 철도장비 운영업무 위탁 용역비 부당수령 의혹	98
19.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정부출연금 부당편취 등 의혹	99
20. 공공기관 자판기 수익금 관련 부패의혹	100
21. ○○시티 관광자원화 사업보조금 횡령 의혹 등	101

제2장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부패신고자 보호]

01. 「직원 근무성적평가 점수 조작 등 특혜 승진 임용 의혹」건 관련 원상회복조치 요구	107
--	-----

02. 「연구·지도직 공무원 호봉 과다산정」건 관련 원상회복조치 요구	108
03.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업무상 배임」건 관련 원상회복조치 요구	109
04.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업무상 배임」건 신고자 보호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	110
05. 「활동지원비 개인통장 지출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건 관련 원상회복조치 요구	111
06. 「특정업체 입찰 참여 알선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건 관련 원상회복조치 요구	112
07. 「대외활동자금 조성·사용 부패행위」건 관련 원상회복조치 요구	113

[부패신고자 보상]

01. 「영농조합법인의 국고보조금 횡령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17
02. 「공공기관 가로등 납품비리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18
03. 「공공기관의 택지개발 조성사업 예산낭비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19
04. 「아파트 하수관 토사준설 공사관련 시보조금 편취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20
05. 「관급공사 레미콘 납품비 편취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21
06. 「동물약품 검사장비 구입관련 국고보조금 횡령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22
07. 「초등학교 주차장 공사관련 비리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23
08. 「○○여자중학교 교장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건 등 44건 관련 보상금 지급	124
09. 「○○지구 폐기물 처리 용역비 편취 및 감독관의 묵인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25
10.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비 편취」건 관련 보상금 지급	126
11. 「자치법규 추록 발간 관련 예산낭비 의혹」등 9건 관련 보상금 지급	127
12. 「약용식물 가공유통센터 보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28



CONTENTS

13. 「약국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담청구」건 관련 보상금 지급	129
14.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관련 국가예산 편취」 건 관련 보상금 지급 ..	130
15. 「재외공관 직원 주택임차료 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31
16. 「저수지 여수로 공사 관련 발파 공사비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32
17. 「시민단체 직원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등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33
18. 「영농조합법인의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 관련 보조금 횡령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34
19. 「공사감리원의 뇌물수수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135
20. 「중소기업 지원 연구비 횡령 등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136
21. 「보육시설원장의 보육교사 인건비 편취」건 관련 보상금 지급	137
2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공사관련 뇌물수수」건 관련 보상금 지급	138
23. 「어촌계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건 관련 보상금 지급	139
24. 「구청 공무원의 탈세 묵인관련 뇌물수수」건 관련 보상금 지급	140
25. 「모타카 및 철도장비 운영업무 위탁용역비 부당수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41
26. 「어린이집 보조금 편취 조사축소」건 관련 보상금 지급	142
27.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의 정부지원금 횡령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43
28. 「사회적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건 관련 보상금 지급	144
29. 「하천 제방보강공사 관련 공사비 편취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45
30. 「방위산업체의 국고손실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46
31. 「○○-○○ 공사구간 공사대금 편취」건 관련 보상금 지급	147
32. 「지자체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48
33. 「○○○TV프로그램 제작비 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49
34. 「산학협력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편취 및 부당집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50

35. 「실업자 우선선정직종 훈련비 편취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51
36. 「하수준설토처리 용역비 편취 및 감독관의 묵인」건 관련 보상금 지급	152
37. 「학원장의 지역실업자 훈련비 등 편취」건 관련 보상금 지급	153
38. 「○○○○ 클린사업 지원금 편취 사업장 등 비리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54
39. 「공무원의 보조금 지원사업 개입을 통한 사익추구」건 관련 보상금 지급	155
40.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정부출연금 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56
41. 「어촌계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건 관련 보상금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	157
42. 「재외공관 직원 주택 임차료 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	158

[부패신고자 포상]

01.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수수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161
02.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일용근로자 인건비 편취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162
03. 「청소년 수련단체의 보조금 횡령」건 관련 포상금 지급	163
04. 「걷기대회 정부지원금 횡령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164
05. 「국민임대주택조성사업 공사 지장물 보상 비리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165
06. 「원자력 발전소 납품 관련 비리 신고」 포상금 지급	166
07. 「○○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해외 여행 수수」건 관련 포상금 지급	167
08. 「○○○○○○공단 지원예산 편취」건 관련 포상금 지급	168
09.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169



CONTENTS

10. 「금고은행·법인카드사의 공무원 해외여비 지원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170
11. 「시의원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171
12. 「군부대 공용물품 사적사용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172
13. 「○○산 산사태 공사비용 부당청구 신고」건 관련 포상금 지급	173
14. 「민원담당 공무원과 공모한 보조금 편취」건 관련 포상금 지급	174

제3장 공익신고 사건

[2012년 공익신고 사건]

01.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179
02. 철도교량 하부보강 부실시공 의혹	180
03. 무면허 약사 행위 의혹	181
04. 화장품 허위 광고 의혹	182
05. 사업용차량에 구형 운행기록계의 강제 장착·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의혹	183
06.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184
07. 무자격 약사 행위 의혹	185
08. 사업자단체의 불공정행위 의혹	186
09. 무자격자의 한방의료행위 의혹	187
10. 보훈환자에 대한 문진약국의 의약품 허위판매 의혹 등	188
11. 치과 의사 진료거부 의혹	189
12. 무자격자 한방의료행위 등 의혹	190
13. 무허가 철거업체의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등	191
14. 무자격자 레이저 피부 시술 의혹	192

15. 무자격자 눈썹 문신 시술 의혹	193
16.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혹	194
17. 무자격자 눈썹 문신 시술 의혹	195
18. 품질검사 부적합 비료 판매 의혹 등	196
19. 미등록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의혹	197
20. 유해식품 판매행위 의혹	198
21. 무자격자 초음파 등 진료행위 의혹	199
22. 무자격자 물리치료 등 행위 의혹	200
23. 무자격자 초음파 등 진료행위 의혹	201
24. 식품 유통기한 변조 의혹	202
25.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기술인력 허위신고 의혹 등	203
26. 한의사의 보톡스 시술 행위 의혹	204
27. 굴 폐각 등 폐기물 해양 무단배출 의혹	205
28. 무자격자 레이저 프락셀 등 피부시술 의혹	206
29. 약초를 식품 등의 원료로 불법 제조·판매한 의혹	207
30. 이어폰 관련 부품 허위특허 광고	208
31. 무자격자 문신 시술 의혹	209
32. 식품업체의 특정거래처 부당지원 의혹	210
33. 불법 석유 유통 신고	211
34. 수질오염 및 비산먼지 공해 신고	212
35.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환경 공해 의혹	213
36. 병원과 약국의 담합 의혹	214
37. ○○○병원 오피스 부적정 처리로 인한 수질오염 의혹	215
38. 폐수오염 및 비산먼지 오염 의혹	216
39. 무자격 눈썹 문신 시술 의혹	217
40. 건설현장 폐기물 불법처리 의혹	218
41. 산업폐기물 매립장 불법 매립 의혹	219



CONTENTS

42. 주물공장 대기오염 및 유해물질 배출 의혹	220
43. 건설폐기물 불법처리 의혹	221
44.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배출 의혹	222
45. 식품류 제조 정지명령 위반 의혹	223
46. 방치폐기물로 대기환경오염 의혹	224
47. ○○소각장 대기 자동측정장치 불법 조작 의혹	225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01. 보일러등유 및 등유의 자동차연료 판매와 사용 의혹	229
---------------------------------------	-----

제4장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구조

[공익신고자 보호]

01. 공익신고 관련 제2012-2호 보호조치 신청 등	235
02. 「가축분뇨 불법배출 및 도로 무단점용 의혹」 건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236
03. 공익신고 관련 제2012-3호 보호조치 신청 및 제2012-1호 책임감면 신청	237

[공익신고자 보상·구조]

01.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판매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1)	241
02.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판매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2)	242
03.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판매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3)	243
04.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판매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4)	244
05.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판매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5)	245
06.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건 관련 보상금 지급	246

07. 「보일러 등유의 덤프트럭 연료용 판매·사용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47
08.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1)	248
09.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2)	249
10.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3)	250
11.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4)	251
12.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1) ...	252
13.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2) ...	253
14.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3) ...	254
15.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4) ...	255
16.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5) ...	256
17.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6) ...	257
18.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7) ...	258
19.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8) ...	259
20. 「미등록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0
21.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소홀」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1
22.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1)	262
23.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2)	263
24.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3)	264
25.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4)	265
26.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5)	266
27.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6)	267
28.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7)	268
29. 「무면허 불법 의료광고 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9
30. 「무신고 집단급식소 운영」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0
31. 「무신고 식품제조가공 영업 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1)	271
32. 「무신고 식품제조가공 영업 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2)	272



CONTENTS

33. 「공익신고등과 관련한 정신적 치료비」건 관련 구조금 지급	273
---	-----

제5장 예규개정 등 의결사항

01.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업무지침 제정안	277
02.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278
03.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279
04.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 지침」 일부 개정안	280
05.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 지침」 일부 개정안	281
06.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자 제재	282
07.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자 제재	283

제6장 기 타

01. 전원위원회 보고목록	287
02. 전원위원회 위원 명단	293
03.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294
04.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안내	296

제1장 부패신고 사건

- ❖ 2012년 부패신고 사건
- ❖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2012년 부패신고 사건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2009. 4. ○○공사 ○○지사에서 발주한 누룽지기계 설치 공사를 수행하면서 당초 계약과 달리 기계를 적게 설치하여 공사비를 편취하고, 피신고자 B는 공사 소속 감독직원으로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부당편취를 도와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피신고기관의 제출자료,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 A는 관련 기계(총 3종 4개 품목)를 미설치 하여 공사비 2,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신고자 B는 부당편취를 도와준 의혹이 있어 수사 및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농림수산물식품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 A는 냉각콘베어 및 이송 콘베어벨트를 미설치하고, 공사비 약 3,071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기혐의로 기소

※ 통보일자 : 2012. 4. 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08. 7. 전국○○대회를 개최하면서 ○○시로부터 보조금 약 1억 1,000만원을 지원받아, 임원단 숙박비 및 식비 등을 허위 결제를 하거나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 천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관련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가 숙박비·식비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횡령한 의혹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피신고자가 식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약 1,516만 원을 임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상 횡령으로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2. 7. 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의료용 검출기 제조 판매회사 (주)○○○ 대표이사로서, ○○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과제를 중복 신청하여 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합계 약 7억 5,00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보조금 횡령과 편취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수사가 필요하고, 감독기관의 보조금 정산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지식경제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보조금 횡령 사실이 확인되어 약식기소
※ 통보일자 : 2013. 2. 8.
- 지식경제부 조사결과, 부당 지급받은 보조금 약 7억 5,000만원 환수
※ 통보일자 : 2013. 2. 1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선박회사 대표들로 2008년부터 ○○부로부터 유조선 등 보유선박을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받아 손실보상금을 지원 받으면서 외국인 선원을 초과승선 시키고 손실보상금 수십억 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바 있고 담당공무원은 묵인해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 신고자들이 정부에 손실보상금 17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허위 청구 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환수 등 행정조치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국토해양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이 16억 4,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상금을 허위청구 하여 편취한 혐의가 확인되어 선박회사 대표 28명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2. 11. 30.
- 국토해양부 :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소속기관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유사경력 인정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 「공무원 보수규정」등 관련 법령에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법정 최저연수 2년(2호봉)을 인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각 대학원의 개별 학칙이 정한 수업연한(2년 6월, 3년 등)을 유사경력으로 과다하게 인정하여 예산을 손실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현행 산정기준이 타당하고, 설사 법령에 위배한 호봉산정이란도 고의에 의한 부패행위로 볼 수 없으나,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개정, 제도개선 등 향후 유사 혼선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소관부처의 조치가 필요

3. 의결결과

행정안전부 송부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행정안전부 조사결과, 연구직 공무원 호봉획정 오류정정(19명), 과오지급금 환수 10명, 약 6,466만 원, 미지급금 지급 3명 약 1,307만 원
※ 통보일자 : 2013. 2. 2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국립대교수로서 정부 육성사업 관련 영리기업의 대표직을 겸임하고 ○○부 출연 과제사업을 수행하면서 실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참여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지출하고, 지원금 절반을 리베이트로 받아 착복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의혹이 있음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관련 사업비 정산자료와 평가기관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확인한 바, 피신고자가 연구원의 인건비 등 사업비를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하고, 국립대교수로서 겸직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지식경제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지식경제부 조사결과, 약 4,463만 원의 부적정 집행 확인, 환수 및 제재 예정
※ 통보일자 : 2012. 4. 20.
- 교육과학기술부 조사결과, 피신고자 1명 경징계, 4명 경고 조치
※ 통보일자 : 2012. 5. 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신도들 시주금으로 석등공사를 하고도, 시공업자와 공모하여 새로 석등 설치공사를 착공하는 것처럼 ○○구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현상변경 허가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등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석등공사를 하면서 신도들로부터 시주금을 받고도, 국고보조금으로 공사한 것처럼 하여 공사금액을 부풀리고, 석등을 설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약 4,200만 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의혹이 있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문화재보호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내사 중지
※ 통보일자 : 2012. 7. 2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2006. 2. ○○○도 ○○○군에서 발주한 『○○○ 하천 개수공사』를 시행하면서, 하천보수용 돌망태 골재를 당초 설계대로 외부 골재장에서 구입하여야 하나, 당해 공사현장 하천에서 채집·사용하여 공사비를 편취하였고, 피신고자 B는 감독 공무원으로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당편취를 도와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A는 돌망태 골재를 외부에서 구입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파쇄·채집하여 공사비 825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신고자 B는 부실감독으로 부당편취를 도와준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 등이 필요함

3. 의결결과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도 조사 결과, 피신고자 A의 공사비 부당편취가 확인되어 공사비 825만 원을 환수조치 하였고, 피신고자 B는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징계(훈계) 처리
※ 통보일자 : 2012. 3. 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무용학과 학생들을 입학과 동시에 무용단에 입단시켜 ○○도 등으로부터 공연 보조금과 지원금을 받고 공연에 출연시키고도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고 봉사 활동점으로 대체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들 명의로 개설된 정규 수업에 시간 강사와 대학원생으로 하여금 실기수업을 대신 시키고, 학생들에게 파트비 명분으로 돈을 걷어 매월 간식, 물품, 명절 연휴비 등으로 제공받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시 공공시설사업소로부터 지급받은 공연료 3,000만원 중 공연에 출연한 무용단원 출연료 약 560만원 상당을 횡령한 의혹이 확인되는 등 수사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교육과학기술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이 공연료 1,870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2. 9. 7.
- 교육과학기술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08. 12. 부터 2010. 12. 까지 지출결의서 및 세금 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각종 사회단체의 협력기금 약 1,766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신고내용, 근무일지, 보조금 관련 정산보고서 등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피신고자들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횡령한 의혹이 있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광역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보조금 약 377만 원 횡령사실이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12. 8. 28.
- ○○광역시 조사결과, 보조금 약 620만 원 환수, 담당 공무원 3명 주의조치
※ 통보일자 : 2012. 5. 1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내수면 담당공무원인 피신고자는 2004. ~ 2010. 경 ○○지역 어민들로부터 어업권 양도·양수가 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회에 걸쳐 수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지역 어민들은 외래어종 수매와 치어를 납품하면서 물량을 속이거나 다른 어민들 명의로 수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 제출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어업권 허가 등과 관련하여 어민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어민들은 어업보상금을 허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환수 등 행정조치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 중

1. 의안개요

- 가구제조업체 대표인 피신고자는 2008. 1.부터 2010. 9.까지 조달 계약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 기능을 갖춘 침대 약 14억 1,100만 원 어치를 전국 공공기관에 납품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위 기능이 없는 침대를 납품함으로써 약 4억 1,60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정부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조달계약으로 침대를 납품함에 있어 당초 계약 내용과 달리 특허 및 실용신안 기능이 없는 물품의 납품에 따른 공공기관의 예산 편취 및 조달청 및 각 수요기관의 검사·검수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 등 조사 및 감사 필요성이 있음

3. 의결결과

경찰청,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가구제조업체 대표 4,240만원 편취 혐의 불구속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3. 2. 4.
- 국방부 조사결과, 구매 및 검수 업무 담당자 2명 ‘경고’, 8명 ‘주의’ 조치
※ 통보일자 : 2012. 4. 19.
- 교육과학기술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공무원으로 2012년도 입학예정인 체육특기생의 아버지로부터 500만 원의 금품수수 등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무릎부상이 있는 체육특기생의 아버지에게 입학대가로 1,000만 원을 요구한 후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어 수사가 필요함
- 또한, 운동부 부모로부터 훈련지도 및 진로 알선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향응 수수, 계약직 코치로부터 금품수수의 의혹이 있어 수사의 필요성이 상당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가 뇌물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인정하여 관할 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
※ 통보일자 : 2012. 6. 1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광역시 통계업무담당자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시 출장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여 출장여비 316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시 관내 동사무소 통계담당자들의 출장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여 출장여비 316만 원을 청구하여 현금으로 수령한 후 횡령한 의혹이 있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와 직근 상급자가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를 공모한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
※ 통보일자 : 2012. 4. 3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연구원에서 직원 채용 시 자격미달자를 채용하고, 직원들의 경력을 부풀려 연봉을 과다하게 산정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연구원 원장은 2009년 채용자격이 미달인 자를 인사담당 부서장으로 채용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의혹이 있음
- 또한, 인사담당 부서장, 인사팀장은 2009~2011년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자신들의 경력을 부풀린 후 약 3,500만 원의 연봉을 과다 산정·수령함으로써 연구원에 손해를 야기한 의혹이 있어 감독기관의 감사 및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 및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연구원 인사담당부서장 권고사직, 인사팀장 파면 및 34,610천 원 회수 조치
※ 통보일자 : 2012. 6. 4.
- 경찰 수사결과, 인사담당부서장의 업무상배임방조 및 인사팀장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2. 11. 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 A, B는 2011. 3. ~ 2011. 8.경 ○○시 소재 ○○천 정비공사를 수행하면서, 식생블럭 관급자재를 적게 납품하고도 전부 납품·시공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공사비를 편취하였고, 감독공무원인 C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공모하여 관급자재를 적게 납품·시공하고도 서류를 허위로 조작, 공사비 1억 8,134만 원을 편취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감독공무원은 설계, 감독, 준공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하여 부당 편취를 도와준 의혹이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피신고자 A는 공사비 7,756만 원 부당편취가 확인되어 불구속 기소, 피신고자 B는 자재비 1억 3,780만 원 환수조치
※ 통보일자 : 2012. 8. 7.
- 도 조사결과, 피신고자 B에게 자재비 환수완료, 피신고자 A의 공사비 편취 환수 진행 중, 피신고자 C 훈계조치
※ 통보일자 : 2012. 12. 1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07년 ~ 2011년경 외국인 선원 송·출입 등 관리 업무를 하면서 5개 업체의 선원 이탈율이 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외국 현지 송출회사의 허위 송출실적을 제출받아 북수국가 관리업체로 지정 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선원이탈율이 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묵인해주고, 외국 송출회사의 허위송출실적을 제출받아 관리업체로 지정해 주었으며 그 대가로 향응수수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국토해양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무혐의
※ 통보일자 : 2012. 12. 7.
- 국토해양부 조사결과, 허위의 송출실적을 제출한 (주)○○선원 관리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조치
※ 통보일자 : 2012. 12. 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05. 4. ~ 2012. 12.까지 ○○청, ○○부, ○○부로부터 약 33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4개 연구개발과제 사업을 하면서 자신 소유 (주)○○에서 자체 추진한 LED사인보드 사업과 대 전방지용 기술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정산하는 방법으로 수십억 상당의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가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자사 개발사업에 사용하고도 연구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정산하여 수 억 원 상당의 정부 지원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지식경제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 중
- 지식경제부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515만 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 되어 환수조치
※ 통보일자 : 2012. 12. 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해외취업연수학원 (주)○○의 대표이사로서, 학원생 출석률에 따라 지원되는 국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출석체크용 지문인식기를 조작하여 ○○공단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약 1,75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가지원금을 편취한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수사가 필요하고, 감독기관의 보조금 정산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고용노동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보조금 편취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3. 2. 13.
-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부당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 환수, 교육과정 승인 제한
※ 통보일자 : 2012. 12. 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1930. 10.경 ○○시 소재 일본인들이 소유하던 국유지 임야 약 8,030m²(시가 100억 원 상당)에 무허가 사찰을 창건하여 운영해오다가 허위 작성한 농지상환곡 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관할 법원 등기소에 제출하고 불법 취득하여 국가예산을 손실케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가 일본인 소유 임야에 무허가 사찰을 창건하여 운영해 오다가 국유지로 변경 되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소유권을 불법으로 취득한 것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기획재정부(○○광역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국유지 허위취득 시기 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시효 소멸로 공소권 없음
※ 통보일자 : 2012. 8. 3.
- ○○광역시 :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시 소재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하여 감골원 및 비닐하우스를 조성하였고, 피신고자 B는 같은 하천부지 내에서 축사 및 창고를 불법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피신고자 C는 담당 공무원으로 피신고자 A, B의 무단점용 사실을 묵인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A, B는 하천부지를 무단점용하여 감골원, 비닐하우스, 축사, 창고를 조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피신고자 C는 하천부지에 대한 관리 소홀이 확인되어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도 조사 결과, 피신고자 A, B의 하천부지 무단점용이 확인되어 변상금 3,313만 원을 추징하고, 관계 공무원 6명에 대해 훈계 및 주의 조치

※ 통보일자 : 2012. 5. 3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도로,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과정에서, 순수한 임목폐기물만을 운송하고 그 처리중량을 정확하게 계근하여 비용을 청구해야 함에도, 피신고자가 보유한 계량기를 이용 또는 일부 「공인계량증명업소」와 유착하여 계량 증명을 조작하거나, 운송차량 바닥에 흙을 채워 중량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년에 걸쳐 사업예산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계량기의 중량기록을 조작한 의혹이 일부 확인되어 처리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수사 및 감사의 필요성이 있음

❖ 3. 의결결과

경찰청, 국방부, 국토해양부, ○○시, ○○도, ○○도, 지식경제부 이첩

❖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약 492만 원의 처리비용 편취 확인, 피신고자 등 4명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12. 11. 30.
- 국방부, 국토해양부, ○○시, ○○도, ○○도, 지식경제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경찰서 경찰관으로서, 사건청탁을 받고, ○○○으로 부터 신고하게 한 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였다가 석방될 때까지 29일 동안 불법 체포 감금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과 관련 증거자료 형사사건 수사기록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경찰관들이 가담한 개연성이 짙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의 무고가 확인되어 구속기소, 경찰관들의 가담부분은 혐의 없음 처분
※ 통보일자 : 2013. 2. 1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호 도선운용을 위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군으로부터 보조금 약 3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면서, 선장 및 기관장 인건비를 50%만 지급하거나 승선하지 않은 기관장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정산하는 방법으로 1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담당공무원은 이를 묵인해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도선운용을 하면서 ○○군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에서 인건비 등 약 1억 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행정조치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보조금 3,300만 원 횡령 혐의가 확인되어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2. 8. 22.
- ○○도 조사결과, 담당공무원 주의조치
※ 통보일자 : 2013. 1. 2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담당 공무원들로 입찰참가 구비서류인 ‘공장등록증’과 ‘현장설명회 참가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고, 감사권을 이용하여 낙찰자 선정과 관련한 심사위원 선정 업무에 개입하는 등 그 권한을 남용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의 입찰비리와 권한 남용여부에 대한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행정안전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12. 11. 7.
- 행정안전부 조사결과, 피신고자 1명 경징계 처분
※ 통보일자 : 2012. 8. 3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09. 12. ~ 2011. 7. 동안 영업용일반화물차량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수리 통보서를 위조하여, ○○구청 차량등록팀에 화물차번호를 허위등록 하고, 유류비보조카드를 불법으로 발급받아 수 억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의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어 사기와 공무집행방해 여부 등의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국토해양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94대의 영업용 화물차 불법변경등록 및 약 4억 9,012만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 편취 사실 확인, 2명 불구속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2. 8. 7.
- 국토해양부 조사결과, 해당차량에 대한 등록 말소, ○○구청에서 유가보조금 약 4억 9,012만 원 환수 결정하여 피신고자들에게 고지
※ 통보일자 : 2013. 1. 2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위·변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일반화물자동차로 불법 변경 등록하고, 불법 변경등록한 번호판을 이용하여 차주들로부터 번호판 사용료와 지입료를 편취하고, 지입차주들은 수천 만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국고를 손실케 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위·변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불법 변경 등록하고,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사의 필요성이 있음

❖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국토해양부 이첩

❖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지입차주로부터 번호판 사용료, 지입료를 편취한 혐의로 피신고자 등 9명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2. 8. 17.
- 국토해양부 조사결과, 해당업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 유예 중이나 판결 후, 감차처분 및 유가보조금 환수 등 조치할 계획
※ 통보일자 : 2012. 8. 2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시의 8개 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기존에 설치된 정화조는 오물을 수거하고 매립토 등으로 폐쇄토록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정화조 폐쇄비용을 부당 청구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 B는 동 현장 책임감리원으로 공사감독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하여 부당청구를 도와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A는 기존 정화조 폐쇄 공사비 1,776만 원을 부당청구하였고, 피신고자 B는 동 공사현장 책임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공사 부실 등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을 위해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도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1. 11. ~ 2011. 12. 까지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진료 횟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이학요법료 약 5,96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위배, 허위진료 기록부를 작성하여 진료 횟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이종으로 청구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보건복지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이학요법료를 편취한 혐의가 확인 되어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2. 10. 30.
- 보건복지부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군 근무 당시 약 7,000만 원 상당의 군용물을 무단으로 폐기함으로써 정부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군용물품 무단폐기 행위 및 피신고자 소속 부대의 군용물품 무단폐기 처리과정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음

3. 의결결과

국방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국방부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군용물 손괴 등에 대한 범죄혐의 없고, 자재관리 절차를 미준수한 과실에 대해서는 이미 문책(중대내 근신 5일, 반성문 제출 3회)하여 종결 처리
※ 통보일자 : 2012. 7. 2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등은 2011. 6. ~ 2011. 12.경에 ○○군의 19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인구수를 충족하고 전입세대 지원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위장전입 시키고, 담당공무원들은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전입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역 등에 거주하는 지역 출신 주민들을 위장전입 시키고 전입세대 지원금 등을 수수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행정조치 등이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 행정안전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선관위, ○○도 조사 결과,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 통보일자 : 2011. 8. 23
- 행정안전부 조사결과, 담당공무원 5급 2명 경징계, 기관경고 조치, 제도개선과제 선정 추진
※ 통보일자 : 2013. 1. 2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중양회’는 ○○시 ○○구청에서 발주한 ‘○○산 산사태 복구공사’의 설계·시공자로 ○○산 산사태 복구공사를 수행하면서 잘못된 사방공사 방식을 채택하고, 운반비와 복구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부풀리고, 임목을 불법으로 벌채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설계에 반영된 사토를 현장 내에서 처리하여 약 4억 7,436만 원을 과다하게 설계한 사실이 확인되어 공사 전반의 과다산정 부분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감사원, 소방방재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감사원, 소방방재청, ○○시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연구사업비 집행 법인카드를 개인용으로 사용한 후 연구 관련 회의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등 연구를 빙자한 목적 외 사용으로 수백만 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였고, 친분관계가 있는 특정 인쇄업체와 유착하여 인쇄물 용역발주를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261건 약 2,304만 원을 회계자료 없이 지출하고, 연구결과보고서 등 발간 시 「내자구매지침」에 따른 절차를 위배하여 임의로 특정 업체에 발주한 사실이 있어,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보건복지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보건복지부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사감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100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 및 금품 2,000만 원을 수수하였으며, 기성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정률을 부풀려 약 40억 원의 기성공사대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공사감독 담당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공정률을 부풀리게 한 의혹이 있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국토해양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시공업자가 공사대금 86억 원을 편취한 사실 확인, 감독 공무원 2,000만 원 뇌물수수 확인, 2명 구속, 3명 불구속
※ 통보일자 : 2013. 2. 22.
- 국토해양부는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이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특수 용도형 화물차 298대를 일반화물차로 불법 변경등록하고, 그 번호판을 타회사로 양도하거나 지입차주들을 모집, 운송업을 영위하여 수 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며, 지입차주들이 국가로부터 12억 1,000여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도록 유인, 국고의 손실을 야기하고, 허위 대·폐차수리통보서 발급과 관련 공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대·폐차수리통보서를 발급받아, 특수 용도형 화물차를 일반화물차로 불법 변경등록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여 국고 손실을 야기한 의혹이 있어 이들의 공모 의혹 등에 대한 수사 및 감사의 필요성이 있음

❖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국토해양부 이첩

❖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 중
- 국토해양부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0. 12.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을 위반하여 ○○대학교수들에게 연구수행성과급 약 수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하였고, 관련 공무원들은 이를 묵인해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내부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고 연구수행 성과급 명목으로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감사원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감사원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10. ~ 2011.경에 ○○청 등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수탁 받아 연구하면서 연구원 인건비를 횡령하고, 과제를 수탁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자문료 형식의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연구원 인건비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연구비를 횡령하고, 연구과제 수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국방부, 감사원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 중
- 국방부, 감사원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이 연구과제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제품을 이미 제조·판매한 사실이 있고, 또한 타사에서도 이미 개발하여 시중에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을 개발할 것처럼 중소기업청을 기망하여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출연금 1억 9,652만 원을 편취한 의혹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정부 출연금 편취 등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과 부적정하게 집행된 출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의 필요성이 있음

3. 의결결과

경찰청, 중소기업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 신기술을 개발할 것처럼 기망하여 출연금 1억 9,652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2. 12. 6.
- 중소기업청 조사결과, 정부출연금 1억 9,652만 원 전액 환수처분 및 해당기관에 향후 3년간 ○○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 통보일자 : 2012. 10. 2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구간은 토사붕괴 방지용 가시설물을 비용이 저렴한 간이휼막이로 변경하여야 함에도 시트파일로 시공하였고, 지질조사 및 버팀보 비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는 등 공사비를 부당청구한 의혹이 있으며, 피신고자 B는 공사감독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A는 지질조사 용역비, 미시공 버팀보·비계 설치비 등 총 1,836만 원의 공사비를 부당청구 하였고, 피신고자 B는 동 사업 감리부실 및 무단결근 감리자의 감리비 798만 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비 환수 및 재발방지를 위해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피신고자 A는 지질조사 용역비, 버팀보·비계 설치비, 감리비 등에서 공사비를 부당청구 한 사실이 확인되어, 공사비 1,836만 원 환수, 피신고자 B는 감리비 798만 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환수 및 감리부실 시정·경고 조치

※ 통보일자 : 2012.12. 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군 담당공무원들은 인구늘리기 사업에 편승하여 직원 회의 등을 개최한 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의 가족과 지역주민의 자녀 등의 주소를 고향에 두도록 하고자 전입신고서를 대리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장전입 시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군 담당공무원들은 이장 및 기관 단체장 등에게도 협조를 구하는 등 인구늘리기에 동참하여 3개면에서 12월 한달 동안 실제 거주 하지 않는 약 306명을 전입시킨 사실이 확인되어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행정안전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행정안전부 조사결과, 면사무소 및 관사 등으로 위장전입을 방조하고, 사후확인 미실시에 따라 기관경고 및 관련자 경징계 조치
※ 통보일자 : 2013. 1. 2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군 담당공무원들은 내고장 주민등록 갯기 운동을 위하여 우편사서함 등을 주소지로 주민등록 하는 사실을 묵인하여 인구를 부당하게 늘려 지방교부세를 수령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군 담당공무원들은 실제 거주지가 아닌 우편사서함을 주소지로 하는 등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되어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행정안전부 이첩

❖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행정안전부 조사결과, 우편사서함과 면사무소 등으로 전입신고 수리 부적정 사례를 적발함에 따라 업무처리에 따른 지휘·감독 소홀시정 및 기관경고 조치
※ 통보일자 : 2013. 1. 2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공단 직원은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업체담당자 등으로부터 약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납품업체 선정 후에는 업체 관계자로부터 부풀려진 납품가의 차익금 약 2,480만 원 상당과 리베이트 약 2,000만 원 상당 등 합계 약 4,5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리베이트(납품가의 10%) 및 납품가를 부풀린 차익금 등을 수수하면서, 특정업체에 대한 평가조작 등을 한 점 등이 확인되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고용노동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 중
- 고용노동부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장애인을 고용해 지하철로 물건을 배송해주는 일을 하는 ○○ 택배회사 대표자로, 장애인인 신고자가 2012. 2. ~ 2012. 3. 기간(2개월) 동안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약 80만 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장애인인 신고자가 휴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은 2개월 동안 일을 한 것처럼 신고자의 급여 통장에 월급을 입금시키고, 신고자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8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고용노동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11명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약 3,037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신고자 포함 2명 고발조치, 추징금 포함 약 3,637만 원 환수 및 해당업체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제한 조치
※ 통보일자 : 2012. 12. 2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1년 국방부가 발주한 도로 확·포장 공사에 하청업체로 참여하면서 2011. 6. ~ 2011. 11.까지 매일 차량 당 6루베씩의 모래를 적재 운반하고도 차량 당 8루베씩 운반한 것처럼 허위로 납품서를 작성, 감독 군부대에 제출하여 수 천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허위 납품서를 작성하여 공사비를 부당하게 편취한 의혹에 대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편취사실이 없어 내사 종결함
※ 통보일자 : 2012. 12. 1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시에서 2011년도에 농로포장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여 동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신고자는 2012. 5. 주민들과 협의 없이 150m 구간(총350m)을 농로가 아닌 양계장 진입로로 원 계획을 변경하여 2,300만 원의 공공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농로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 관리·감독 소홀 등 해당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상당하므로 감사의 필요성이 있음

3. 의결결과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시에 기관경고(주의), 관련 공무원 1명 훈계 조치
※ 통보일자 : 2012. 12. 1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교통안전시설용품인 차량충돌흡수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면서 시공단가가 65만 8,000원 인데도 불구하고 약2배나 비싼 약 122만 원의 가격으로 시공하여 차액을 편취한 의혹이 있고, 시험성적서와 다른 제품이 설치되어 있어 재설치가 필요함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부 등록 전문가격 조사기관 등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이나 관급자재로 거래되는 방호울타리 가격이 70만 원 이하임에도 예정가격이 평균 약 89만 원 높게 하여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적합한 제품이 설치되고 관리되도록 실태조사 및 관리감독이 필요함

3. 의결결과

국토해양부, ○○도, ○○도, ○○공사 등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공사 조사 결과, 재료비를 과다하게 적용하였으나 예정가격은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한 가격으로서 시공사의 잘못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조치는 어려우며,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
※ 통보일자 : 2012. 11. 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대학교수인 피신고자들은 2009. 6. ~ 2010. 1.까지 대학에서 연구사업에 참여했던 한시계약직 강사가 평정심사 결과 임용부적합자로 판정되었으나, 적합한 것으로 조작하여 정규교원으로 채용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교수채용과정에서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금품수수 여부 등의 수사와 함께 교수채용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등을 위한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교육과학기술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학교장은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공사 및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수시로 금품을 수수하고, 지위가 불안정한 계약직 조리사의 사정을 악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영양사와 조리원들에게 부당한 지시와 강요로 학생들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와 음식물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교장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영양사와 조리원들에게 지속적인 강요와 부당한 지시로 천 만 원 상당의 급식재료와 음식물을 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 되었고, 각종 공사에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시교육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보육교사들의 통장 및 도장을 관리하면서 근로계약서상의 임금보다 과소지급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보육료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결행하고 피신고자가 수령한 의혹이 있고, 아동이 국외에 체류한 사실 있음에도 보육료를 부당하게 청구(약80만 원)하였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한 기간을 초과하여 기본보육료를 청구한 의혹이 있어 영유아보육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감독이 필요함

3. 의결결과

보건복지부 및 ○○광역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시 소재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부식비 영수증을 조작하거나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을 미지급하여 국가보조금을 편취하였고, 생활지도원 ○○○에게 수천만 원 금품을 요구하였으며, 서류 조작으로 후원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으며, 피신고자 B는 동 시설 담당 공무원으로 보육원 지도 감독 및 보조금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A는 부식비 영수증 조작 및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국가보조금 3,353만 원을 편취하였고, 생활지도원 ○○○에게 뇌물을 요구하여 4,200만 원을 수수하였으며, 파라솔 설치비용 870만 원을 후원금에서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신고자 B는 보육원 지도 점검 및 보조금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어 보조금 회수 및 금품수수 등에 대한 수사와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등이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 중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횡령하고, 감독공무원은 조성공사 시행권 및 분양대행권을 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약 20억 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횡령과 배임을 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공하며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지자체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추진하면서 횡령 및 배임한 의혹이 있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도 이첩

❖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부 출연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면서, 직원의 친척 및 제자 명의로 지원기업을 설립한 후, 업체선정 및 사업계획 서류를 조작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억 5,500만 원 이상의 사업비를 편취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피신고업체에서 생산한 수백만 원 상당의 의류상품을 수회에 걸쳐 택배 형태로 수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의 기업지원 서류작성과 용역계약을 통한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편취하였고, 관련 공무원들은 의류상품을 수수한 의혹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A공사가 자회사인 B와 수의계약에 의하여 약 21억 원의 사업비로 00관리시스템 구축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위 용역을 수행할 업체로 C를 사전에 내정하여 작업을 시킨 후 C로 하여금 일반경쟁 입찰 형식을 취하여 위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등 B의 공정한 입찰업무를 방해한 의혹이 있고
- 또한, 피신고자는 2011. 1.~2011. 5.까지 사업비 약 1억2,000만 원으로 '00마스터플랜 수립'용역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 용역 결과물을 실제 업무에 활용하지 아니하였고, 노트북컴퓨터 2개를 약 1,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구입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공공기관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공기업 간부의 ICT사업 관련 입찰방해, 특정업체 특혜부여, 공기업 직무관련자 간의 금품수수 등이 확인되어 수사 및 감사 필요성이 있음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지식경제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공기업 간부 4명을 입찰방해,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각 기소(불구속)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2013. 1. 25.
- 지식경제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 조사결과 수용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공노인일자리사업 운영기관인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중, 노인들의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을 부풀려 과다하게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 동의없이 일정액을 법인 후원금으로 자동이체 시키는 수법으로 국가예산 낭비와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공공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부풀려 근무상황 기록부를 허위기재하거나, 참여자들에게 허위 기재토록 지시하여 관리자 서명을 한 후, 국고보조금 약 322만원을 과다 지급하여 국가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보건복지부 및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교육청 특수교사들로 2010. ~ 2012.경 특수휠체어, 장애인단용 검사지 등 교육기자재를 대학 동창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구매해주고 리베이트를 받거나 구매수량과 가격을 부풀려 횡령하고, 특수교사 워크숍, 특수교사 연수과제 강사료 등을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수 천만 원 상당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제출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특수학생용 교육기자재 등을 특정업체에서 구입하고, 특수교사 워크숍 강사료 등 약 5,000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행정조치 및 제도개선 등이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광역시 교육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 B는 ○○○도 ○○○군 소재 『○○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시공사 및 사업시행자로 피신고자 A는 당초 설계보다 공사를 적게 시공하였고, 피신고자 B는 피신고자 A가 제출한 준공내역에 공사내용을 허위로 추가하여 공사비를 부당 편취하였으며, 피신고자 C는 책임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A는 당초 설계에 반영된 공사를 축소시공 하여 공사비 1억 3,637만 원을 부당편취 하였고, 피신고자 B는 전혀 실시하지도 않은 공사를 마치 시공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공사비 6억 1,727만 원을 부당편취 하였으며, 피신고자 C는 피신고자 A, B의 부당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묵인하였으므로 공사비 환수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해 수사 및 감사 등이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단으로부터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약 22억 원을 용자받아 재생블럭 공장을 설립하면서, 재활용 제품생산 실적이 없음에도 자금을 신청하고, 건축 시공업체와 이중 계약으로 실제 건축비용보다 4억 9,000만 원 상당을 부풀려 시설 용자금을 지원받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공단에 건축비용이 12억 9,300만 원 소요되는 도급공사 계약서와 견적서를 증빙하여 시설자금을 용자받았으나, 이후 사업변경 신고 없이 시공업체인 ○○건설과 8억 원으로 변경계약 하는 방법으로 실제 소요비용보다 4억 9,300만 원을 부풀려 정부지원 용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기술원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아동의 보육시간을 부풀려 보육료를 허위청구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약 1,286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보육교사를 1명 두고도 2~3명을 둔 것처럼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아동들의 보육시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육료를 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부에서 2억 7900만원과 ○○시에서 1억 3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단가와 수량을 부풀려 허위매출전표를 발행받거나, 속칭 “카드깡” 또는 각 지회에 입금해 준 유류대와 식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수 천 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하여 사용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매년 ○○○상사 등을 통해 허위매출전표를 발급받고 물품지원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허위 정산하여 6,472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과 ○○시 보조금으로 4년간 유류비와 식대 5,921만 원 상당을 부당 사용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감사원, 행정안전부, ○○광역시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장애인심부름센터 예산으로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환급금을 ○○시각장애인협회에 넘겨 불법으로 유용하고, 장애인심부름센터 직원 채용시 승급, 보수확정의 지침을 위반한 의혹이 있으며, 감독기관인 ○○시는 이를 알고도 묵인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두 번에 걸쳐 운전원 3명 명의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1,237만 원을 환급받아 지침을 위반하여 시각장애인협회의 예산에 편성하고, 직원 채용 시 규정을 위반하여 호봉확정과 승진 및 승급을 센터장 임의대로 처리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처리를 한 점이 확인되어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주유소에서 화물차에 주기적으로 기름을 주유하면서, 실제 주유한 기름의 양보다 많은 양을 주유한 것처럼 카드결제 하는 방법으로 약 3,000여만 원의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여 국가예산을 낭비시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공모하여 주유소에서 주유한 양을 부풀려 카드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국토해양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공사 임직원들은 공공기관 예산으로 개발된 용역결과물을 특정업체에 무단 유출하였고, 해당 업체가 지적재산권을 임의 취득 후 공사에 참여토록 특혜를 부여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공사는 입체횡단시설(육교) 설치를 위해 건축설계 용역계약을 A사와 체결하였으나, 용역성과물 제출 시점에 B사가 동일 디자인을 특허청에 지적재산권(디자인)으로 등록하여 취득 한 후 시설공사 시 하도급자로 참여함
-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개발된 설계용역 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제3자가 임의 취득했다는 점에서 해당 정보의 무단 유출 및 지적재산권 침해로 ○○공사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함으로써 동공사 및 A사·B사의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 및 금품 수수 의혹이 있어 수사의 필요성이 상당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0. 9. ~ 2011. 11.경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에 의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군과 ○○시 소재 산업단지로 이전하면서 공장 건물면적과 기업신용평가등급 등을 부풀려 작성하는 방법으로 국비 및 지방비 등 지원금 수십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담당공무원들은 이를 묵인해 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가 지방이전을 하면서 ○○부와 지자체로부터 정부 지원금 수십억 원 상당을 허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상호 공모하여 ○○시로부터 매년 1억 원씩 3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여성합창단연합회 주관으로 ‘○○시여성합창경연대회’를 개최하면서 경연대회 보조금 1억 원 중 지휘자, 반주자 사례비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3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정산하고, 현수막과 배너 제작비로 480만 원을 지급하고 88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정산하는 등 3,500만 원 상당을 부적정 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합창대회를 개최하며 회계서류를 허위정산 하는 방법으로 합창대회 보조금을 부적정 하게 사용한 의혹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 중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규정에 차량의 감가상각비 지급 대상이 출고된 지 6년 이하 차량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출고된 지 6년이 초과된 차량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과다 지급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관내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차량에 대해 감가상각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과다 지급한 의혹이 일부 확인되어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광역시 이첩

❖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다기능 행정선 선박을 건조하면서 발주자의 승낙 없이 페인트 공정을 일부 생략하고 공사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 B와 피신고자 C는 피신고자 A가 시방서와 다르게 공사하는 것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의혹이 있으며, 피신고자 D는 피신고자 A가 선체검사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용접부분이 불합격임에도 서류를 조작하여 합격증을 교부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A는 도장공사 공정을 일부 생략하여 약 4,600만 원 이상의 공사비 편취 및 다른 사양의 구조정 납품으로 약 7,400만 원 이상을 편취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 B와 피신고자 C는 책임감리 및 공사감독로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피신고자 D가 수행한 비파괴검사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불명하여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해양경찰청 및 행정안전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 중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기존 고용 중이던 근로자를 새로 취업한 청년인 것처럼 위장 신고하고 권고사직 처리한 근로자를 계속 근무하다 자진 퇴사한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편취하고, 청년취업 인턴을 채용할 여건에 맞추기 위해 상시 근로자 수를 부풀려, 청년인턴제와 청년직장 체험자를 추가 채용하여 약 670여만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청구하는 등 총 1,420여만 원의 국고 손실을 야기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이미 퇴사한 근로자를 계속 근무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의혹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 및 감사의 필요성이 있음

❖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고용노동부 이첩

❖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군에서 버섯을 전문으로 재배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업비수기인 2011. 12. ~2012. 2. 동안 ○○군 ○○면 소재 현장에 서 별목작업을 하면서 농업용(난방용)으로 지급된 면세유 약 25,000L를 임대장비에 약 50일간 불법 주유하여 예산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농업용으로 지급받은 면세유를 별목작업용 중장비에 사용한 의혹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 및 감사의 필요성이 있음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단으로부터 해외취업 연수과정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취업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연수생 12명을 22명으로 부풀려서 교육훈련비를 과다 청구하고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공단 제출 자료를 확인한 결과, 22명의 연수비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교육기관 출석부에는 연수생 12명만 작성되고 출석자 서명이 된 상태이며 피신고자에 대한 유사사건에 대하여 경찰청 수사가 있고 약 5,800만원 상당 편취 의혹이 있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고용노동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연수생 등 10명은 허위연수·허위취업임을 확인, 일부 6명은 71일간 허위로 출석을 연장하는 등 출석 조작 확인, 이에 따라 허위출결 연수비 약 8,919만 원과 취업정산금 재정산 환수액 약 3,057만 원 등 총 1억 1,976만 원 환수 조치
※ 통보일자 : 2013. 1. 29.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신고자 소유의 농지에서 실제 쌀농사를 짓고 있지 않았음에도 지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농지 소재지 읍사무소와 군청에서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쌀직불금을 지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철쭉과 각종 채소를 심은 농지에 벼농사를 지은 것처럼 쌀직불금을 신청하여 약 48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것이 확인되고, 농지 소재지 관할 읍사무소와 군청에서는 담당직원의 업무과중을 이유로 피신고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현지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급한 것이 확인되어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쌀직불금 약 48만 원 부당수령 확인, 군청 및 읍사무소 담당공무원 2명 훈계
(피신고자는 본인이 부당 수령한 쌀직불금 군청에 자진반납 처리함)
※ 통보일자 : 2013. 2. 1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4대강 담합사건의 결과발표를 지연시키고 과징금을 부당하게 경감해주고, 그로 인하여 건설회사로 하여금 축소된 과징금만큼의 경제적 이익 및 발표가 미뤄진 기간 동안 과징금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융이익을 취득하게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여부 등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에서 해당 부서 관련서류를 압수수색하여 수사 중에 있으므로 수사에 참고하도록 기관송부 할 필요성 있음

3. 의결결과

대검찰청 기관송부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신항 준설공사를 시공하며 공정률을 부풀리고, 공사 감독일지 등을 허위 작성해 기성공사 대금을 편취하고, 공사감독 공무원들은 금품을 수수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준설공사를 시공하며 위조계약서 등으로 호퍼준설장비 동원비 편취 및 신항 준설공사의 작업량을 부풀린 개연성이 확인되고, 담당공무원 진술 및 관련 서류에 의해 선금을 미 정산한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호퍼준설장비의 객관적인 실 가격을 조회하여 관세포탈 여부 확인 등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관세청, 국토해양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수년에 걸쳐 검찰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전하고, 사기혐의 피소 등 사건과 관련한 청탁을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업을 하며 검찰공무원에게 청탁 대가성 뇌물을 공여하고, 검찰공무원은 이를 수수한 의혹이 있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 중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도로부터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산업 육성’ 연구용역(연구비 2억 7,000만 원)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피신고자가 설립한 (주)○○에너지에 위탁 연구용역을 준 것처럼 하여 위탁 연구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용역수행 참여 연구원 진술 및 ○○연구원 위탁연구비 지급확인서, 용역수행 참여인력 명부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2008. 2.경 설립한 (주)○○에너지에 1억 1,000만 원의 연구용역을 주었으나, 연구원 대부분이 실제 연구한 사실이 없는 등 총괄 책임연구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허위서류를 꾸며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검찰 조사결과, 연구용역비 1억 4,905만원 편취 확인, 피신고자 1명 뇌물수수, 사기,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2. 5. 1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가 2008. 7. ~ 2009. 5. 까지 90억 원의 사업비로 영어 체험마을 조성 사업을 하면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특정업체와 수익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업체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 제출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이 사업 관련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및 특혜의혹이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이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또 다른 지자체 영어체험마을에 나타나고 있어 영어체험마을 사업장 선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감사원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감사원 조사결과, 해당업체 8억 5,900만 원 과다계상 확인, 해당기관 주의통보, 관련 공무원 4명 문책(주의) 요구, 관련 업자 2명 검찰 고발 조치
※ 통보일자 : 2012. 7. 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 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05년 ~ 2010년 경에 ○○연구소로부터 378억 원을 지원받아 ○○전차 엔진을 개발하면서, 회사에서 판매하는 엔진에 사용된 부품이나 연료비, 연구원 인건비를 ○○엔진 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속여 29억 원을 편취하고, ○○청과 양산계약 하면서 원가를 부풀려 42억 원을 편취하는 등 약 7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사실에 대하여 신고자 진술과 증거자료,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전차용 엔진을 개발하면서 자체 판매용 엔진이나 신규개발용 엔진에 사용된 부품 등 30억 원 상당을 ○○전차용 엔진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속이고, 개발된 전차엔진 100대를 초도양산 계약하면서 부품원가를 부풀려 약 4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방위사업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 통보일자 : 2012. 8. 16.
- 방위사업청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자체로부터 영화체험마을 사업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마을 홈페이지 구축과 영상체험장비 등을 구입하면서 허위 정산서를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 수 천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허위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장비를 처분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7,427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보조금 편취 의혹에 대하여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불기소(혐의 없음) 처리
※ 통보일자 : 2012. 4. 18.
- ○○군 조사결과, 부당청구 보조금 환수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 통보일자 : 2012. 9. 5.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 B는 요양사들의 서비스 제공시간을 허위 기재하거나 시간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비용 수 천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신고자 C는 동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신고인 제출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을 허위 기재하거나 부풀리는 수법으로 약 844만 원을 편취하였고,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시간을 허위로 이중 청구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 준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조사결과, 피신고자들의 업무상 배임 등의 잘못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 없음
※ 통보일자 : 2012. 1. 1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가 완제의약품에 대한 원료의약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았음에도 제조한 것처럼 속여 보험약가를 최고가로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관세청 통관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면서,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거나 타사로부터 구입하였음에도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등을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약제비 19억 3,9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결과, 피신고자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
※ 통보일자 : 2011. 12. 29.
-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군수는 자신의 동생 소유의 가족묘 인근에 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피신고자 B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진입로 설치를 지시하였고, 이에 피신고자 B, C 등은 주민숙원사업인 것처럼 하여 소하천사업 예산으로 진입로 설치 공사를 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군수 가족묘 차량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 소하천정비사업 예산을 편법으로 편성하여 추진하였고, 소하천사업 담당자가 아닌 주민숙원사업 담당공무원이 농로확포장 공사를 하는 등 소하천 사업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검찰 조사결과, 범죄 혐의가 없어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12. 1. 12.
- ○○도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스타디움 전광판 교체사업(사업비 44억 원)을 하면서 피신고자 B와 공모하여 발주기관, 계약방법 등을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대가를 받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스타디움 전광판 교체사업을 하면서 특정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찰공고 전 제안서 사전제공, 발주기관 및 계약방법 변경, 중소기업 경쟁제품 해제, 긴급 입찰공고 추진 등 특정업체가 유리하게 해 주고 대가를 받은 의혹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광역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조사결과, 관련 피신고자 3명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금품수수 9,900만원 확인
※ 통보일자 : 2012. 4. 4.
- ○○광역시 조사결과, 사업자 선정 계약절차는 적법하였고, 조직위 관계자들의 혐의 사실도 확인할 수 없었음
※ 통보일자 : 2012. 4. 2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모하여 ○○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개발된 연구과제를 신규 과제인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꾸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정산 처리하는 수법으로 정부 출연금 수 십억 원 상당을 횡령 하거나 유용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진술, 관련기관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신고자들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력산업 연구개발,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발전사 협력연구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허위 정산 처리하는 수법 등으로 정부출연금 도합 15억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횡령(유용)한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지식경제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지식경제부 조사결과, 인건비 173만 원 부적정 집행 확인,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환수 및 후속조치 예정
※ 통보일자 : 2011. 12. 28.
- 경찰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구 ○○국장 등으로, 기부채납지 등기이전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들로서, 2005. 4. 증여인 ○○○의 기부채납지인 ○○동 토지(192.5㎡)의 등기이전 제반서류를 제출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구청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의혹 등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관련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신고자 및 관련자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시 이첩

❖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조사결과, 피신고자들의 직무유기는 공소시효 만료, 업무상 배임은 혐의 없는 것으로 조사됨
※ 통보일자 : 2012. 2. 23.
- ○○시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01. 8. ~ 2010. 9. 까지 (사)○○문화축제제전위원회에 재직하였던 자로, 재임기간 중 ○○도 등으로부터 문화축제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하면서 허위 사업비 집행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 수억 원을 횡령하였고, ○○회로부터 2008년과 2010년도에 ○○문화제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행사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축제사업비 집행시 간이영수증에 의한 정산, 자부담금 축소정산, 사업비 송금 후 일정액 돌려받기, 무상 제공된 행사부스 사용료 징수 등으로 비자금 약 5억 원을 조성하여, 그 일부를 전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에 대하여 일부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검찰 조사결과, 보조금 2,773만 원 횡령 확인, 1명 불구속 기소, 1명 기소유예
※ 통보일자 : 2012. 12. 1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타일 판매업체 대표 피신고자 A는 2009. 7.부터 2011. 7.까지 ○○시 ○○수도사업소 등과 특허제품 메탈록스타일을 납품하기로 계약한 후, 실제로는 일반 하이그로시 타일을 납품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신고자 B, C, D는 배수지 공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급자재 선정과 구매 계약을 피신고자 A에게 유리하도록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계약서와 다른 제품이 납품되었음을 알고도 묵인해 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A의 사기혐의와 피신고자 B, C, D의 업무상 배임 의혹 등에 대하여 일부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시, ○○○도,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조사결과, 혐의가 입증되어 불구속 입건 13명, 검찰 송치 예정
※ 통보일자 : 2013. 2. 1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05년부터 ○○○○공사, ○○공사 등에 열차부품을 납품하면서 허위로 수입신고한 수입신고필증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국내에서 생산한 모조품들을 독일산 수입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단가를 높게 받음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납품업체 관계자 진술 및 관련기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공사, ○○메트로, ○○공사에 약 17억 5,382만 원에 해당하는 열차부품을 납품하면서, 국산을 독일산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무역관련 서류를 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모조품을 납품하면서 납품 단가를 부풀려 수 억 원 상당의 공공기관 예산을 편취한 의혹에 대하여 일부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관세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및 관세청 조사결과, 7억 3,962만 원 편취 확인, 2명 불구속 기소 송치, 1명 지명수배, 벌금 110만 원 통고처분
- ※ 통보일자 : 경찰청 2012. 6. 12. / 관세청 2012. 6. 2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2010. 12. ○○산업지원단으로부터 약 24억 원을 지원받아 해양플랜트기술개발 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처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부터 연구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 하였다가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15억 원을 횡령하고, 피신고자 B는 위와 같은 사실을 묵인해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사실에 대하여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해양플랜트 개발과제를 수탁 받아 수행하면서, 연구개발 장비 및 재료를 허위 구매하는 방법으로 정부지원금 약 15억 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지식경제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가 지경부 등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받아 해양플랜트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면서 기술개발과 관련이 없는 개인채무금 상환 및 대출 원리금 상환과 체납세금 납부 등의 용도로 18억 9,711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가 확인되어 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2. 4. 19.
- 지식경제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피신고자 (주)○○가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을 위한 기술가치 평가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행해 주고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 A는 2009. 9.부터 2009. 10.까지 피신고자 (주)○○의 기술보증을 위한 기술가치 평가를 실제보다 높게 해 보증서를 발행하여 피신고자 B가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고 그 대가로 피신고자 B로부터 뇌물 9,5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의혹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금융위원회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조사결과, 피신고자들의 혐의가 확인되었으나 도피 중에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 중임
※ 통보일자 : 2012. 12. 10.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02. 7.경 ○○시에 신축중인 상가건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알선한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2002. 3.~2006. 5.동안 상가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뇌물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참고인 진술 및 관련기관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신축중인 상가건물의 사용승인을 관계 공무원에게 알선한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검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 통보일자 : 2012. 10. 2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중양회는 ○○부와 급식품목협정 및 공급계약을 하고, 국고금 관리법에 의해 선급금을 받아 군납물품을 구매·보관하는 바, 피신고자 등은 2009. 11.경 군납용 대멸치 16,740kg 7,100만원 상당, 2010. 4.경 소멸치 30,000kg 2억 1,700만원 상당을 군납 이외로 판매·횡령한 의혹 등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부 직원의 진술, 관련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의 업무처리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독기관 등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국방부 및 농림수산식품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국방부 조사결과, ○○중양회 직원과 군 관계자와의 공모여부 및 군납과 관련한 비위행위 등은 발견하지 못함
※ 통보일자 : 2012. 2. 20.
- 농림수산식품부 조사결과, ○○중양회 담당자들이 군납용 멸치 등을 판매한 사실 등은 확인되나, 판매대금의 횡령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제도개선' 통보조치
※ 통보일자 : 2012. 2. 1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레일(주) 대표이사로 2008. 12. ○○메트로에서 발주한 「모타카 운전 및 철도장비 운영업무위탁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비 청구과정에서 용역 순원가에 부가세를 포함할 수 없음에도 재료비와 정비비에 부가세 10%를 포함시켜 용역 순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약 4억여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기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위탁용역비 순원가에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청구하여 편취한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수사가 필요하고, 예산손실 등 사업전반에 대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시 이첩

❖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검찰 조사결과, 범죄 혐의가 없어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12. 5. 21.
- ○○시 조사결과, 부가세 이중지출액과 이자 약 4억 2,236만 원 환수 조치
※ 통보일자 : 2012. 6. 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중소기업 대표들로서, 피신고자 A는 2009년~2011년 중소기업청 주관 신제품개발사업 및 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에 대해 이미 개발된 제품의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정부출연금을 편취하고, 피신고자 B는 2008년~2010년 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에 대해 허위 물품구입 등을 통해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09년 신제품 개발사업에서 개발이 완료된 제품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허위 제출하여 2억을 편취하고, 해외 체류 중인 연구원을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3,400만 원을 횡령, 2008. 12. ~ 2010. 2.경 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와 상관없는 물품구입 및 교육영수증을 첨부하여 3,42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지식경제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조사결과, 피신고자들의 5억 7,000만 원 편취사실 확인,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2. 9. 10.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조사결과, 사업비 환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통보일자 : 2012. 12. 1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등 임직원들은 2003. 7.부터 공금으로 구입한 커피자판기 450대를 자신들이 출자한 직장새마을금고에 편법으로 위탁 운영 하도록 특혜를 주고, 2003. 7.이후 커피자판기운영 공개입찰 시 예상되는 약 9억 8,000만 원의 임대수익금을 포기하고 2004년 부터 2010년 까지 벌어들인 커피자판기 수익금 135억 원을 전액 새마을금고에 위탁수수료로 제공하고, 자신들도 출자배당금으로 일부를 고 이율로 지급받는 등 배임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부패의혹이 일부 확인 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농림수산물식품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조사 결과, 피신고자의 배임 및 횡령의혹 등을 발견하지 못함
※ 통보일자 : 2012. 6. 18.
- 농림수산물식품부 조사결과, 고정자산 관리규정 개정 중, 새마을금고와의 수익계약 재검토 조치 예정
※ 통보일자 : 2012. 10. 3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관광자원화 사업 관련 보조금을 교부 받아 집행하면서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계약절차를 지키지 않고 특정업체에게 용역사업을 몰아주고 사업담당 공무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묵인해 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관광자원화 사업에서 현지 활동비를 임의적으로 인상하여 횡령하고, 특정업체와 용역사업 4건(1억 8,630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업체와 공모의혹이 있고, 교부된 사업 보조금을 일부 횡령하고 용역사업을 하면서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보조금을 계속 교부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을 손실케 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조사 결과, 피신고자 1명이 47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 피신고자 1명은 행정상 과오가 확인되어 ○○군에 통보
※ 통보일자 : 2012. 6. 1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제2장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 부패신고자 보호

❖ 부패신고자 보상

❖ 부패신고자 포상



부패신고자 보호

1. 의안개요

- 요구인의 ○○○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함) 임직원들의 ‘직원근무성적평가 점수조작 등을 통한 특혜 승진임용 의혹’ 신고에 대한 위원회 조사결과, 근무성적평가지 일부 절차상 하자 내지 오류가 확인되어 해당 사항을 감독기관인 ○○○부에 통보하였고, 이에 평가원측이 관련자들을 서면 경고 조치한 사실이 있고, 내부 신고로 인하여 징계조치(해임)를 당하여 이에 대한 원상회복조치로 해임처분의 취소가 필요함

2. 심의결과

- 요구인은 특혜 승진임용 의혹 등을 소속 기관 감사실에 서면으로 신고하였고, 신고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문제점이 지적된 점 등을 보면 보호대상이 되는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로 볼 수 있고,
- 평가원의 징계 선례, 인사위원회 회의자료, 관련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요구인의 신고가 요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직접적·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 평가원장에게 요구인에 대한 징계처분(해임)의 취소를 요구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요구인은 ○○○연구원에 근무하면서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호봉을 과다하게 산정했다는 내용을 외부기관(위원회, ○○○부 등)에 정보공개청구 및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해외학회 참석을 취소당하고, 서울 본원에서 지방소재 소속기관으로 전보조치를 당하여, 이에 대한 원상회복조치로 전보조치의 취소가 필요함

2. 심의결과

- 요구인의 신고는 부패행위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 부패행위 신고로 접수하였다는 점, 법 규정 및 선례에 의하면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만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신고내용에 허위사실이 없는 정당한 문제제기 자체는 적극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신고자 보호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로 볼 수 있고,
- 전보조치의 절차 및 사례, 관계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요구인의 신고가 요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직접적·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 연구원의 전보조치는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연구원장에게 불이익처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요구인에 대한 전보조치의 취소를 요구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시 위생처리사업소 동료 직원이 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생활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를 누락하였다는 부패행위를 요구인이 소속 기관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처분(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116,000원)을 받았으나 위원회 보호조사결과 신고 준비과정에서의 사실확인 및 불가피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원상회복조치로 징계처분의 취소가 필요함

2. 심의결과

- 요구인의 신고내용에 허위사실이 전혀 없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부패행위 신고이므로 보호대상이 되는 부패신고로 볼 수 있고,
- ○○○시의 징계요구서, 수사기록, 감사담당관 및 담당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구인은 부패신고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없고, 참작사유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당한 것으로써,
- ○○○시의 징계처분은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장에게 요구인에 대한 징계처분(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116,000원)의 취소를 요구하고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시 위생처리사업소 동료 직원이 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생활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누락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인에게 품위유지 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 처분한 ○○○시장에게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함

2. 심의결과

- 법 제63조에서는 신고한 후에 위원회에 원상회복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91조에는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에게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 본 건의 경우, 신고자가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서 요구인의 귀책사유가 없고 참작사유가 있는 요구인에 대한 부당한 징계처분으로서 ○○○시장이 요구인에 대한 징계 의결요구를 하고 처분권자로서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점에서 ○○○시장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나,
- ○○○시장이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여 요구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신속히 취소하였다는 점, 징계를 ○○○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는 점 등에서 법령상의 감경사유인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한 3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요구인은 ○○○산업단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업무과장 직을 수행하면서 소속기관 직원의 카드승인 매출전표 없이 활동지원비를 개인통장으로 지출하는 행동강령위반행위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보조치를 당하여, 이에 대한 원상회복조치가 필요함

2. 심의결과

- 요구인의 신고는 ○○○산업단지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15조(투명한 회계관리) 위반 또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였으므로, 요구인은 이 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됨
- 협의회의 제출자료, 요구인 및 참고인의 진술, ○○○부 및 ○○○산업단지공단의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부패행위 신고가 요구인의 전보 인사발령에 직접적·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 협의회의 요구인에 대한 전보조치는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협의회 의장에게 불이익처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요구인에 대한 전보조치의 취소를 요구하고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요구인이 소속기관 상급자가 특정업체의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계약내용의 변경을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자체 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실·팀장급 직위에서 실·팀원급 직원으로 사실상 강등 조치를 당하였고, 계약연장을 거부당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원상회복조치가 필요함

2. 심의결과

- 요구인의 신고는 ○○○원 행동강령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로써, 조사결과 신고 내용에 허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보호대상이 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인 것으로 판단되고,
- 요구인에 대한 전보 및 계약연장이 거부된 정황, ○○○원의 계약 직원에 대한 계약연장 관행, 인사위원회 심의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구인의 신고가 요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직접적·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 원의 요구인에 대한 계약연장거부는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장에게 불이익처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요구인에 대한 계약 연장 조치(1년)를 요구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요구인이 소속된 기관에서 법인카드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골프장, 단란주점 등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간부급 직원이 50만원 또는 30만원씩 각출, 활동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경영진이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부패행위를 ○○○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파면)을 받아, 보호조치 요구한 사건을 조사한 바 이에 대한 원상회복조치로 징계처분(파면)의 취소가 필요함

2. 심의결과

- 대외활동자금 조성·사용과 관련한 요구인의 신고는 기관 자체 행동강령 제18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및 제23조(골프 및 사행성 행위의 제한)를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한 신고로써 ○○○실 및 ○○○부의 감사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상기 신고는 이 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로 볼 수 있고,
- 요구인에 대한 징계사유서, 징계의결요구서 및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징계심의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요구인의 부패행위 신고가 요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직접적·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 ○○○원의 요구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장에게 불이익처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요구인에 대한 징계처분(파면)의 취소를 요구하고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함

부패신고자 보상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영농조합법인의 국고보조금 횡령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군의 벼싯재배 및 판매를 하는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인 피신고자가 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영수증을 허위기재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약 2억여원을 편취한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하였음
- 이에 따라 피신고자가 공탁한 보조금 편취분과 이자 등 1억 4천여만원이 환수되었고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보상금 26,219,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공공기관 가로등 납품비리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가로등 납품업체의 대표인 피신고자가 당초 계약과 달리 질이 낮은 가로등을 ○○시를 비롯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품·설치하면서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과 이와 관련 공사 담당공무원 등이 뇌물을 수수하여 이 같은 사실을 묵인했다는 사실, 즉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하였음
- 이에 따라 피신고자가 편취한 공사대금과 추징금 등 약 3억 9천여 만원이 환수되었고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보상금 68,219,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공공기관의 택지개발 조성사업 예산낭비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아파트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공사를 하면서 사업단지 내의 일부 교량 등에 설계된 합판 거푸집 대신에 유로폼으로 시공하는 등 계약서와 다르게 시공을 하여 공사비를 부당하게 편취하였다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하였음
- 이에 따라 피신고자가 부당 편취한 공사비 약 1,100여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위 비용절감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보상금 2,358,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아파트 하수관 토사준설 공사관련 시보조금 편취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시공사 대표와 공모하여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기재한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하였음
- 이에 따라 피신고자가 부당 편취한 보조금 약 340여만원이 환수되었고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보상금 696,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관급공사 레미콘 납품비 편취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관급공사 현장에 실제로는 설계도면에 책정된 양만큼의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설계도면 대로 더 많은 양의 레미콘을 사용한 것처럼 물품납품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여 레미콘 대금을 수령한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위원회에 신고하였음
- 이에 따라 피신고자가 부당 수령한 레미콘 대금 약 1억 1,400여만원이 환수되었고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보상금 22,015,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동물약품 검사장비 구입관련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사)○○동물협회의 관계자 등 피신고자들이 동물약품 검사장비 구입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을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 발행을 통해 횡령한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하였음
- 이에 따라 보조금 5억원의 전액환수가 결정되었으며, 이 중 2억원이 우선 환수되었고 위 환수 등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보상금 7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초등학교 주차장 공사관련 비리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시 소재 ○○초등학교교장 및 행정실장이었던 피신고자들이 공사업체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였음에도 검수를 하지 않고 공사비와 인건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하였음
- 이에 따라 과다집행된 공사비 약 1백여만원이 환수되었고,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나 신고내용의 사건해결 기여도가 미약하였음을 감안, 산정된 보상금의 30%를 감액하여 14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여자중학교 교장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건 등 44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 교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위반하여 학교에 배정된 업무추진비를 사적단체의 회비, 지역인사의 명절 선물 구입비 등으로 집행한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신고하였음
- 이에 따라, 피신고자들이 부당집행한 업무추진비 등 약 7,600여만원에 대하여 환수결정이 이루어지고 이 중 약 4,600여만원이 환수되었고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상금 15,363,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지구 폐기물 처리 용역비 편취 및 감독관의 묵인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덤프트럭에 폐기물을 신고 계근대를 통과한 후 다시 ○○지구로 들어가 그 폐기물을 버리는 수법을 사용하거나 허위의 번호판을 만들어 교체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폐기물처리비용을 부풀려 편취한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하였음
- 이에 따라 피신고자가 편취한 용역비 약 6억여원이 환수되었고,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보상금 86,373,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비 편취」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보상금 기 수령 후 보상대상가액의 누락금액에 대한 추가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보상금의 추가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공동수급사와 감리업체들이 가시설물 설치구간에 가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설계내용대로 설치한 것처럼 하여 공사대금을 불법 편취한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위원회에 신고하였음
- 이에 따라 피신고자들이 편취한 공사비 등 8억 4,900여만원이 추가환수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보상금 33,983,000원을 추가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자치법규 추록 발간 관련 예산낭비 의혹」건 등 9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 추록을 특정업체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하여 인쇄함으로써 특혜를 주고 있으며, 실제 배부부수보다 많은 자치법규 추록집을 인쇄하여 예산을 과다계상·집행하고 있는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하였음
- 이에 따라, 과다집행된 예산 약 3,700여만원이 환수되었고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보상금 7,458,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약용식물 가공유통센터 보조금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 신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영농조합 이사가 약용식물 가공유통센터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가공유통센터를 완공하면서 자부담없이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음에도 마치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 것처럼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국가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하였음
- 이에 따라 편취된 보조금 약 2억 1,700여만원이 환수되었고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보상금 36,452,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약국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담청구」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유족대표자인 배우자가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신청인에 대하여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시 소재의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인 피신고자들이 약국을 인계인수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과다하게 부풀려 허위로 청구한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하였음
- 이에 따라 요양급여 부담청구분 등 3억 1,300여만원이 환수되었고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법적상속인에게 보상금 49,824,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관련 국가예산 편취」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수의사회지부 회장 및 동물보호소장 등인 피신고자들이 ○○광역시와 산하구청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허위정산의 방법으로 부당 청구하여 편취한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하였음
- 이에 따라 편취한 국고보조금 등 약 1,700여만원이 환수되었고,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보상금 3,484,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재외공관 직원 주택임차료 횡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피신고자인 전임자가 후임자를 대신하여 해외 현지에서 아파트를 임차계약하면서 주택하차보수 등의 명목으로 되돌려 받은 임차료를 횡령하였다는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하였음
- 이에 따라 피신고자가 횡령한 임차료 약 1,000만원이 환수되었고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보상금 2,026,000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저수지 여수로 공사 관련 발파 공사비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암발파 공사를 설계와 달리 화약을 사용하는 등 진동발파공법으로 공사하고도 설계대로 시공단가가 높은 약액주입공법으로 공사한 것처럼 속여 공사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하였음
- 이에 따라 피신고자가 부당하게 수령한 공사비 약 7,300여만원이 환수되었고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보상금 14,765,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시민단체 직원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등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피신고자들이 서로 공모하여 방문학습 교사 명단 및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하였음
- 이에 따라, 피신고자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지원금 약 3,400여만원이 환수되었고 위 환수 조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보상금 3,475,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영농조합법인의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 관련 보조금 횡령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공공기관이 시행한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어 공장을 설치하면서 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하였음
- 이에 따라 피신고자가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 8억 2천만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고 위 조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보상금 5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공사감리원의 뇌물수수 등」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의 감리원이자 감리사 이사인 피신고자가 시공사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공사비용을 부풀리는 것을 묵인하거나 공법변경에 따른 설계변경보고를 하지 않는 등 시공사 등의 부당이득을 도모하였다는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하였음
- 이에 따라 피신고자 등의 과실로 과다책정된 공공기관 발주 공사대금 약 4억 4,300여만원이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되었고 위 비용절감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보상금 68,132,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중소기업 지원연구비 횡령 등 비리」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산학연협력연구소 지원연구비를 사무원 인건비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고 파견 보낸 연구원의 인건비로 지급하는 등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하였음
- 피신고자가 횡령한 지원금 약 1,100여만원이 환수조치 되었고 위 환수조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보상금 1,15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보육시설 원장의 보육교사 인건비 편취」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실제 퇴사하였거나 근무하지 않는 보육교사를 근무하는 것처럼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여 구청으로부터 보육교사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하였음
- 이에 따라 피신고자가 부당 편취한 보조금 약 4,400여만원이 환수되었고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보상금 8,856,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공사관련 뇌물수수」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소 하수과장 등이 자신의 담당부서에서 발주한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의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현금 및 골프접대 등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 즉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신고하였음
- 이에 따라 피신고자들에 대하여 법원에서 5억 3,3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하였고 위 추징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상금 39,65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어촌계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행위를 감독하여야 할 수산담당 공무원이 어촌계장과 담합, 금품을 수수하고 부정유통을 묵인해 주고 있으며 어촌계어민들은 실제 어로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면세유를 부당하게 수급하여 자동차주유 등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하였음
- 이에 따라 피신고자들이 부정수급한 면세유에 대하여 약 2억 4천여 만원의 추징이 이루어졌으며, 위 추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상금 39,644,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구청 공무원의 탈세 묵인관련 뇌물수수」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 신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팀장과 직원이 세무조사과정에서 건설업체가 취·등록세를 탈루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건설업체에 7,000만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업체에서는 세무과 직원에게 금품을 준 사실, 즉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신고하였음
- 이에 따라 피신고자들에 대하여 약 3억 4,200여만원의 추징이 이루어졌고 위 추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인이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산정된 보상금의 10%를 감액하여 48,564,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모타카 및 철도장비 운영업무 위탁 용역비 부당수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피신고자인 (주)○○레일의 대표가 ○○메트로가 발주한 ‘모타카 운전 및 철도장비 위탁용역’업체로 선정되면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산정하여 3년의 위탁운영기간 동안 약 4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하였음
- 이에 따라 피신고자의 법령위반 등 과실로 부당지급된 용역비와 이자 등 합계 약 4억 2,200여만원이 환수되었고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보상금 65,131,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어린이집 보조금 편취 조사축소」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피신고자인 ○○시 ○○구청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관할 어린이집의 보조금 허위청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축소·환수결정하여 예산을 낭비케 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하였음
- 이에 따라 피신고자가 환수를 축소하여 결정한 어린이집 보조금 등 합계 약 680여만원이 환수되었고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금 1,377,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의 정부지원금 횡령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의 지급과 신고불이익의 원상회복에 소요된 비용(실직기간 중 임금)을 청구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등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피신고자인 ○○시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 재단 정부지원금 등을 횡령한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하였음
- 이에 따라 피신고자가 편취한 재단 정부지원금 약 3억 7,800여만원의 반환명령을 통해 약 1억 3,800여만원이 우선 환수되었고, 재단에 지급키로 한 건강지원 보조금 약 2,100여만원이 감액되었고 위 환수 등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보상금 61,897,000원을 지급키로 결정함
 - ※ 원상회복 비용은 추가조사를 통해 지급여부 결정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사회적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 신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피신고자인 (사)○○정책연구원의 대표와 동 연구원의 전 사무국장이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참여인력을 허위로 조작하여 수역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하였음
- 이에 따라 前 사무국장이 부정수급한 보조금 약 950여만원이 환수되었고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보상금 1,909,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하천 제방보강공사 관련 공사비 편취 등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하천 제방공사를 시행하면서 미승인 토취장이거나 강바닥에서 불법 채취한 토사를 사용하고도 마치 토취장에서 순성토를 운반하여 사용한 것처럼 시행청을 속여 공사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하였음
- 이에 따라 피신고자가 부당 편취한 공사비 약 3억 6,500여만원이 환수되었고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보상금 57,111,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방위산업체의 국고손실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추가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던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보상금의 추가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방위산업체의 대표이사인 피신고자가 ○○용 주추진 전지 등 각종 전지의 교체 공사계약을 하면서 실제 노무량보다 4~5배 부풀려 계약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하였음
- 피신고자가 부당 편취한 대금 약 2억 3,100여만원이 추가 환수되었고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나, 신청인이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산정된 보상금의 30%를 감액하여 6,493,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 공사구간 공사대금 편취」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피신고자들이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임시 구조물인 공사용 가교는 시공 후 없어진다는 특성을 이용해 이를 설계보다 축소 또는 미시공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하였음
- 피신고자들이 부당 편취한 공사비 중 일부인 약 8억 1,900여만원을 감액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비용이 절감되었고 위 비용절감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보상금 87,959,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피신고자들이 복사기, 컴퓨터 소모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자에게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하도록 요구한 후 남은 차액을 착복하거나 납품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하였음
- 이에 따라 피신고자들이 부당 편취한 약 7,700여만원이 환수되었고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보상금 15,441,000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TV프로그램 제작비 횡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피신고자들인 ○○○TV 연예정보프로그램의 제작팀장 등이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지 아니한 직원들을 차명으로 이용, 인건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수억원의 제작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 즉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하였음
- 이에 따라 피신고자들이 횡령한 ○○○TV 프로그램 제작비 등 약 3억 2,900여만원이 환수되었는 바,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보상금 52,103,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산학협력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편취 및 부당집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사단법인 ○○○○기술지원단의 단장 등이 중앙부처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연구용역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면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 대학원생들이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작성하여 연구비, 인건비 등을 이들의 계좌로 입금한 후 다시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정부출연금을 편취하거나 목적외 용도로 부당집행한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하였음
- 이에 따라 피신고자가 부당 편취한 연구비 약 1,900여만원이 환수되었고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상금 3,905,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실업자 우선선정직종 훈련비 편취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실업자 직업훈련 및 재직근로자 전문교육기관의 대표자가 우선선정직종훈련의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공조냉동기계 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육생들에게 총 7권의 교재 중 2권만을 교부하고 서도 7권을 교부한 것처럼 일괄수령증을 받아 훈련비를 편취한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하였음
- 이에 따라 피신고자가 부당 편취한 훈련비 약 120여만원이 환수되었고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상금 242,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하수준설토처리 용역비 편취 및 감독관의 묵인」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의 지급과 신고불이익의 원상회복 소요비용(이사비용)을 청구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등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피신고자들인 ○○시 소재 하수준설토 운반업체와 수집업체 대표 등이 하수준설토 처리량을 속이는 수법으로 수 억원의 용역비를 편취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은 이 같은 사실을 묵인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 즉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하였음
- 이에 따라 피신고자들이 편취한 하수준설토 처리용역비 등 약 6억 여원이 ○○시 ○○구청의 공탁금 수령을 통해 환수되었고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며, 신고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노출로 피신고자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되므로 보상금과 이사비용을 합산하여 88,36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학원장의 지역실업자 훈련비 등 편취」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피신고자인 ○○시 소재 지역훈련학원의 대표와 허위로 학원에 등록된 수강생들이 상호 공모하여 수강명단을 허위로 조작, 지자체로부터 훈련생 491명에게 매월 25만원씩 지급되는 훈련비 등 약 13여억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위원회에 신고하였음
- 이에 따라 피신고자가 편취한 지역실업자 훈련비 및 훈련수당 등 약 9억 6,700여만원의 환수가 결정되고, 이 중 약 1억 6,300여만원이 우선 환수되었는 바,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보상금 122,739,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 클린사업 지원금 편취 사업장 등 비리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피신고자들이 상호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실은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적재하중의 지게차를 구입함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청구하여 지게차 매수대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하였음
- 이에 따라 피신고자들이 부당 편취한 보조금 약 6억 1,400여만원이 환수조치 되었고 위 환수 조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보상금 87,128,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공무원의 보조금 지원사업 개입을 통한 사익추구」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군청 산림교통과장이 자신의 처남 명의의 임야에 임도가 개설되도록 ‘관내 임도개설 계획’을 변경요청하고, 같은 교회 신도들에게 지가상승이 예상된다고 임야매입을 권유, 다운계약함으로써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실과, 같은 교회 신도들이 허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의 산양삼재배단지조성사업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 즉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하였음
- 이에 따라 피신고자가 부당 편취한 보조금 등 약 9,900여만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 19,889,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정부출연금 횡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 신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피신고자인 벤처기업 ○○○인프라 대표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된 정부출연금을 연구 기자재 구입 등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하였음
- 이에 따라 피신고자가 횡령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정부출연금 약 3억 500여만원의 환수가 결정되는 등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보상금 24,385,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어촌계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건의 보상금 결정으로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하였던 바, 이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의

2. 심의결과

- 이 사건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출세액의 4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 것으로 행정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이와 관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서는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도 벌금·과료·과징금·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은 지급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행정벌 또는 행정재제금적 성격의 부과는 행정기관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신고로 인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등으로 보기 어려워 보상금 지급사유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 바,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기각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재외공관 직원 주택임차료 횡령」보상금 결정으로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미환수금액에 대한 위원회의 환수 권고 및 이에 대한 보상금 추가 지급, 불이익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보상금 지급신청(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의함

2. 심의결과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에서는 부패행위의 신고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이 있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처분을 당한 경우 그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미환수금액에 대한 ○○○○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 위원회가 환수권고기능이 없는 점, 재판결과 등에 의하여 원상회복비용이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미환수금액에 대한 위원회의 환수 권고 및 이에 대한 보상금 추가 지급, 불이익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보상금 지급신청(이의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기각함

부패신고자 포상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여부 및 그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지방의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 대표가 보낸 떡과 50만원의 상품권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신고하였음
- 이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위 신고로 인해 교육계에 관행화 되어 있는 촌지 등 생활 속 잔존부패가 적발되는 등 공익증진의 효과를 거두었음
- 따라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어 포상금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일용근로자 인건비 편취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그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시 ○○운영재단의 직원이 관광객들을 상대로 사진 촬영 등을 담당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근무기록을 조작, 인건비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신고하였음
- 이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위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에 대한 벌금형 및 소속기관의 징직처분이 있었고 피신고자가 편취한 인건비 약 410여만원이 환수되었음
- 따라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어 포상금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청소년 수련단체의 보조금 횡령」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여부 및 그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사단법인 ○○○연맹 부총재 겸 ○○협회 대표가 공공기관들로부터 지원받은 청소년수련관련 행사보조금 등을 허위문서 작성, 자금세탁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횡령하고 있다고 신고하였음
- 이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위 신고로 인해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아 보조금 횡령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 따라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어 포상금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걷기대회 정부지원금 횡령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여부 및 그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사단법인 ○○체육진흥회가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걷기대회를 주최하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홍보비 등을 중복수급 받고 있다는 내용을 신고하였음
- 이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위 신고로 인해 중복지원된 홍보비가 환수되고 피신고자는 2년간 보조금대상단체선정제외 및 보조금 지원중단 조치를 받아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행위가 사전에 차단되는 등 공익증진의 효과를 거두었음
- 따라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어 포상금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국민임대주택조성사업 공사 지장물 보상비리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피신고자인 ○○시 ○○지구 국민임대주택조성사업을 담당한 ○○공사의 직원과 대상지역의 지장물 보상금 수령자들이 상호공모하여 허위의 인우보증서와 서류 등을 통해 지장물 보상금을 부당하게 청구·수령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였음
- 이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것으로 위 신고로 인해 보상금 부당지급을 목인한 ○○공사직원과 보상금 허위수령자 등 53명이 기소되고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는 등 공익증진 효과가 발생하였음
- 따라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어 포상금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원자력 발전소 납품 관련 비리 신고」건을 ○○지방검찰청에 신고하였는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피신고자인 원자력발전소 납품비리 사건의 공범이 금융기관 주차장에서 거액의 현금다발을 포장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 이를 ○○지검에 신고하였음
- 이로써 원자력발전소 납품비리에 관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이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것으로 위 신고로 인해 관련자 5명이 기소되었고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는 등 공익증진의 효과를 거두었음
- 따라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어 포상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해외여행 수수」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시 계약직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면서 산하 기관의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직무관련자에게 여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신고하였음
- 이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위 신고로 인해 부패행위자가 징계처분을 받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의 수수 행위에 대한 공공기관의 경각심이 제도되는 등 공익증진의 효과를 거두었음
- 따라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어 포상금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공단 지원예산 편취」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콘넥터 자동조립기 등을 납품받으면서 중소기업 지원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립기의 납품가를 높여 허위 설비제작계약서, 납품명세서 등을 만들어 줄 것을 납품업체에 요구하여 공단으로부터 2억 4천만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신고하였음
- 이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위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부당 대출금이 전액 상환조치되어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여는 등 공익증진의 효과를 거두었음
- 따라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어 포상금 3,5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시 자치구의 공무원인 피신고자가 건설업체로부터 술, 스크린골프 등을 접대받고 골프웨어 제품을 선물로 받는 등 직무관련자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신고하였음
- 이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위 신고로 인해 부패행위자가 징계처분을 받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의 수수 행위에 대한 공공기관의 경각심이 제고되는 등 공익증진의 효과를 거두었음
- 따라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어 포상금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금고은행·법인카드사의 공무원 해외여비 지원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피신고자인 ○○부와 한국○○공사를 비롯한 53개 공공기관의 금고·법인카드 업무 담당자 등으로서, 직무관련자인 금고은행 및 법인카드사로부터 해외여비 등 부가서비스를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였음
- 이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위 신고로 인해 행동강령위반사실이 통보된 한국○○공사 관계자 2명이 징계(견책) 처분을 받았고,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는 등 공익증진의 효과를 거두었음
- 따라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어 포상금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시의원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따른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의혹」건 등 6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시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95%이상을 음식점과 술집에서 집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과 관계없는 관외지역이나 심야, 주말시간대에 집행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 사실을 신고하였음
- 이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위 신고로 인해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가 환수되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었음
- 따라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어 포상금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군부대 공용물품 사적사용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군 소속 전대장이 부대지휘운영비로 횃집에서 지인을 접대하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직위를 이용하여 병사들로부터 골프채, 안경, 그림 등을 수수하는 한편, 개인여가활동을 위한 골프연습장 조성지시, 안마강요 등 부하장병들에게 권한외 사역을 지시한 사실을 신고하였음
- 이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위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에게 형사처분 및 자격정지형에 따른 제적처분이 이루어지고 횡령액에 대한 환수처분이 이루어져 유사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공익증진의 효과를 거두었음
- 따라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어 포상금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산 산사태 공사비용 부당청구」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는 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피신고자인 ○○조합중앙회가 2011년 8월 ○○시 ○○구청에서 발주한 ○○산 산사태 복구사업 공사(4공구)를 설계, 시공하면서 공사내역을 과다산정하여 수억원 상당의 공사비용을 편취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였음
- 이는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위 신고로 인해 ○○산 산사태 복구공사 공사비 과다책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었고, ○○시가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의 공사비 과다선정부분을 감액하는 조치가 남아있다고 밝히는 등 공익증진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어 포상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민원담당 공무원과 공모한 보조금 편취」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위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

2. 심의결과

- 신고자는 피신고자인 ○○군 축산담당 공무원이 관내 축산 허가, 초지조성허가 관련 각종 보조금 지급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민원인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직원을 남용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였음
- 이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위 신고로 인해 뇌물을 수수한 담당공무원이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기타 관련자 2명도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공익증진의 효과를 거두었음
- 따라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어 포상금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제3장 공익신고 사건

- 2012년 공익신고 사건
-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2012년 공익신고 사건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18개 약국은 일명 ‘카운터’라 불리는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의약품 판매, 복약상담 및 지도를 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의 공익침해행위의 개연성이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무자격자 고용 의약품 판매 등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 : 2012. 3. 12.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 및 B는 경부고속선 낙동강교 하부에서 발생하는 세굴(강바닥 등이 유수로 깎이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 중 일부 구간에서 저면매트 설치·고정 및 세굴방지블럭 연결을 설계대로시공하지 않았으며, 피신고자 C는 책임감리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조치하지 않는 등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신고자 및 참고인 등의 제출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의 부실시공 및 감리소홀 의혹에 대하여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국토해양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국토해양부 조사결과, 시공사 ○○건설(주) 및 감리전문회사(주)○○○○ 등 6개업체에 2.0~1.6점의 별점을 부여하고, 현장대리인·책임감리원 등에게 2.0점의 별점 부여
※ 통보일자 : 2012. 2. 22.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약사가 아닌데 약국에서 가운을 입고 의약 상담과 의약품 판매하는 등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 등이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지방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무면허 약사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명백하지 않아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12. 3. 2.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미용·용품 제조회사로서 자사의 홈페이지에 ○○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와 미용천연물질(SGAG)을 공동개발하였다는 문구로 광고하고,
- ○○대학교 ○○○과학연구소와 미용 마스크팩을 공동 연구·개발하여 특허등록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으며,
-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특허사항을 피신고자가 관련된 특허현황인 것처럼 게재하여 공익침해의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 및 관련기관이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공정거래위원회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화장품법 제29조제1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 : 2012. 3. 15.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거짓·과장 광고행위가 인정되어 시정명령
※ 통보일자 : 2012. 7. 11.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버스를 생산하여 출고할 때, 소비자가 원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장착하여 판매하는 등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배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는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선택사양을 변경 요청할 경우 협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 통보일자 : 2012. 9. 4.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2개 약국은 일명 ‘카운터’라 불리는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의약품 판매, 복약상담 및 지도를 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의 공익침해행위의 개연성이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무자격자 고용 의약품 판매 등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
※ 통보일자 : 2012. 4. 18.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약사도 아니면서 고객에게 의약 상담을 하고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 있음

2. 의결이유

- 무자격자의 의약 상담 및 판매 행위 등이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 지방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무면허 약사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명백하지 않아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12. 3. 14.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중소할인점 등에 생산원가 이하로 계란이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생산원가 이하로 계란을 할인판매하는 중소할인점에는 구성사업자(계란유통업체)의 계란납품을 금지하고, 그러한 중소할인점에 계란을 납품하는 구성사업자에게는 계속 할인행사 참여시 모든 거래를 차단하겠다고 경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가 일정한 계란판매가격을 유지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개연성이 상당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조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함

3. 의결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한의사도 아니면서 유헥오리가 중증 말기 암에 좋다고 인터넷 등에 허위 광고를 하고 유헥오리와 한약재를 섞어 만든 한약을 고객에게 고가로 판매하였으며 싹뜸을 불법으로 시술하여 질병을 악화시키는 등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인터넷 동영상 등 제출된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무자격자의 한의약 상담 및 조제, 싹뜸시술, 과대광고 행위 등이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공조 조사·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3. 의결결과

○○경찰서 및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불법 의료행위가 확인되어 징역1년, 벌금 500만 원, 가납 노역장 유치 환형유치금 5만 원
※ 통보일자 : 2013. 1. 4.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약국개설자로서 보훈환자들과 공모하여 환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였음에도 처방전대로 조제한 것처럼 조제기록부 등을 조작하는 「약사법」 위반 행위로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의 개연성이 있어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여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12. 7. 13.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치과의사로 근무하면서 인프란트 수술 예약 환자와 일반 환자의 진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등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수술 예약 환자와 일반 환자의 진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등이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가 무단이탈 경위를 병원 관리이사에게 문자로 통보한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혐의
※ 통보일자 : 2012. 8. 1.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의료인도 아니면서 생식(건강보조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를 하고, 부항과 침 등을 불법으로 시술하여 질병을 악화시키는 등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 내용과 이해관계인 진술 등을 확인·조사한 결과, 피신고자가 무자격으로 한방의료 상담, 사혈 및 부항, 침 시술,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을 한 것이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불법 의료행위 등이 확인되어 구속 공판중

※ 통보일자 : 2013. 1. 4.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무허가 철거업체로서 콘크리트 골조물 철거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폐 콘크리트 4만 톤 상당을 공사 현장 주위에 불법 매립하였고,
- 피신고자 B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피신고자 A에게 재위탁 하였음에도 다른 업체에게 재위탁한 것처럼 관할 지자체에 허위 신고하는 등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익침해 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의 공익침해행위 의혹이 상당하여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 ※ 통보일자 : 2012. 11. 14.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의료인도 아니면서 레이저로 피부를 깎는 시술을 하는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무자격으로 피부에 레이저 시술 등을 한 것은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무자격 의료행위가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 : 2012. 10. 18.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의료인도 아니면서 눈썹 부위에 문신을 시술하는 공익 침해행위를 한 의혹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무자격으로 피부에 문신 등을 시술하는 것은 공익침해 행위로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불법 의료행위 등이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 : 2012. 5. 29.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10개 약국은 약사 자격이 없는 자들을 고용하여 의약품 판매 및 복약 지도를 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및 제출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의 공익침해행위의 개연성이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무자격자 고용 의약품 판매 등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 : 2012. 6. 11,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의료인도 아니면서 눈썹 부위에 문신을 시술하는 등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무자격으로 눈썹에 문신 등을 시술하는 행위는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무자격 의료행위가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 : 2012. 5. 29.

1. 의안개요

- 비료생산업체 대표인 피신고자는 일반비료에 첨가가 금지되는 폐기물을 첨가하여 생산한 유기질 비료가 품질검사에서 유기질 성분 함량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농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 비료 생산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인근 토지에 방치하거나 상수도 보호구역에 무단으로 투기하고,
- 친척 또는 농민 명의로 허위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군청으로부터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여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와 정부 보조금 횡령 의혹이 상당하여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내사 종결함
※ 통보일자 : 2012. 6. 26.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유스호스텔 건물 5동 중 2동만 군청으로부터 청소년 수련시설로 등록허가를 받은 후 나머지 미등록 건물 3동에 숙박 정원을 초과하여 청소년 숙박시설로 운영하는 등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등 공익침해행위 의혹이 상당하여 사실 확인 및 행정조치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충청남도 ○○군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군 조사결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위반사실이 인정되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함
※ 통보일자 : 2012. 7. 9.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어간류가 말기 암에 특효가 있다는 허위 과대·광고를 하고, 건강에 해로운 식품을 불법 제조, 고가에 판매하여 건강을 악화시키는 등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건강에 해로운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판매하여 건강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이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지방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불법 의료행위 등이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
※ 통보일자 : 2012. 6. 21.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의사도 아니면서 진단용 초음파기기로 검사하고 혈액을 채혈하여 검사하는 등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무자격으로 진단용 초음파기기 등을 이용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및 행정조치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보건복지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불법 의료행위 등이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 : 2012. 8. 24.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부항과 쑥뜸을 시술하고, 혈액을 채혈하는 등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무자격으로 한방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및 행정조치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보건복지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불법 의료행위 등이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 : 2012. 10. 16.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의사도 아니면서 진단용 초음파기기로 검사하고 혈액을 채혈하여 검사하는 등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무자격으로 진단용 초음파기기 등을 이용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및 행정조치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보건복지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검찰에서 동일한 사건으로 불기소 처분한 사례 적용 무혐의
※ 통보일자 : 2012. 7. 30.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삭스핀(상어지느러미)’, ‘연어알’ 및 ‘날치알’ 등을 수입·가공·생산·판매하는 업체로 자사 제품 중 유통기한이 지나 반쯤된 것들을 비닐·박스 포장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 하는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동영상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자사의 ‘삭스핀’, ‘날치알’, ‘연어알’ 제품들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 것이 사실일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수사 및 조사, 감독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 필요함

3. 의결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위해사범중앙조사단)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결과, 유통기한 변조 등 공익침해행위 혐의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
※ 통보일자 : 2012. 7. 27.
- 검찰 수사결과, 유통기한 변조 사실이 인정되어 회사 및 대표에게 각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청구
※ 통보일자 : 2012. 11. 9.
-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진행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법령상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필수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채용한 것처럼 환경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 기술인력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직원에게 시료 채취 및 검사를 시키는 등 검사기관을 위법하게 운영하여 공익 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공익침해행위 의혹이 상당하여 수사 및 감독기관의 행정처분이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환경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 : 2012. 12. 6.
- 환경부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의사가 아니면서 고객의 사각턱에 보톡스를 시술하는 등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무자격으로 고객의 얼굴에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와 신고자 주장이 엇갈려 불법 의료행위 입증곤란으로 무혐의
※ 통보일자 : 2013. 1. 7.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이 굴 패각, 해삼 양식 시설물 등을 해양에 무단으로 배출(방치)시켜 환경을 오염 시키는 등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배출·방치하여 해양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해양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환경파괴(오염) 등 혐의가 확인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 : 2012. 10. 16.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레이저(미세침 치료기)를 이용하여 피부 시술을 하는 등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무자격으로 고객의 얼굴에 레이저 프락셀 등을 시술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의사의 보건지도에 따라 시술한 것으로 무혐의
※ 통보일자 : 2012. 11. 12.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중국 오지마을 잔리촌에서 만든 환화초를 불법으로 수입·제조하여 이를 3일간 마시면 태아의 성별을 바꾸는데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등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 있음

2. 의결이유

-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환화초’를 불법 수입·제조하여 태아의 성별을 구별하는데 효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가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 입증할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13. 1. 8.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각종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자사의 이어폰 관련 제품을 특허 받지 않았음에도 특허 받은 것으로 광고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 및 특허청(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 회사에서는 관련 제품에 대해 2009년에 특허출원하여 2011년에 거절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특허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사 홈페이지 제품소개에서 ‘특허 받은 똑똑한 이어폰 ○○○’로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광고 경위·기간 및 거래금액 등을 조사하여 행정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음

3. 의결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행위가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하나 2012. 9.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어 종결처리
※ 통보일자 : 2012. 10. 22.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신체 부위에 문신을 시술하는 등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무자격으로 신체에 문신을 시술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불법 의료행위가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 : 2012. 10. 22.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 ○○식품(주)은 피신고자B ○○농수산(주)에게 수년간 수입 장려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납품 및 영업 관리 대행 인력을 지원하는 등 다른 회사에 비하여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및 인력을 부당하게 지원하여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 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A ○○식품(주)이 피신고자B ○○농수산(주)에게 수입장려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납품 및 영업 관리를 대행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지원하고 있는 개연성이 상당하여 해당 조사기관의 조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필요함
-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자금이나 인력의 제공 등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지원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금지됨

3. 의결결과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산업개발의 대표이고 피신고자 B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신고자 A는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등유 및 등유를 2010. 8.부터 2012. 7.까지 매입하여 덤프트럭 및 포크레인 등 골재채취 장비의 연료로 사용하였으며, 피신고자 B는 2010. 8.부터 2012. 5.까지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등유 및 등유를 피신고자 A가 대표로 있는 ○○산업개발에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의 연료로 판매하는 등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B가 피신고자 A가 대표로 있는 ○○산업개발로 보일러 등유와 등유를 판매한 기록이 있다는 점, 보일러등유 및 등유를 구입하여 골재 채취 및 운송을 위한 장비에 연료로 사용하였음을 신고자가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조사·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 보일러등유 및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영업장 폐쇄 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및 벌금에 해당됨

3. 의결결과

○○도 및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위법행위를 한 피신고자 B의 주유소 3개월 사업정지
※ 통보일자 : 2012. 11. 26.

1. 의안개요

- 피신고인은 골재(모래)채취업을 하면서 식수원에 수질오염을 야기시켜 인근 주택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골재채취 공사장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수질배출시설 미신고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로 인근 지하수 오염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 행위는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됨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 경찰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인은 수송차량의 적재함 과적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시설의 설치 없이 보관함으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및 건설폐기물 보관관리기준 위반으로 주변 환경오염을 유발한 행위는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됨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지방경찰청, ○○광역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광역시 조사 결과, 피신고자에게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경고 처분함
※ 통보일자 : 2012. 10. 26.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처방전을 발행하면서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유도하는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특정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도록 환자를 유도하는 것은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지방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불법 담합행위 등이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 : 2012. 12. 10.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병원을 신축하면서 오폐수처리시설의 용량 부족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으로 병원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정상처리하지 않고 정안천으로 배출하여 수질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기타수질오염원 미신고, 방지시설운영 일지 미작성,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됨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및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서 및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결과, 혐의 없음
- ※ 통보일자 : 2012. 10. 22.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서 토양정화사업을 시행하면서 외부로 통행하는 토사 수송차량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부지 내 고여 있는 폐수가 외부로 유출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 공익침해행위의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또한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것과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를 미이행한 것은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됨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서 및 ○○구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의료인도 아니면서 눈썹 부위에 문신을 시술하는 등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무자격으로 눈썹에 문신 등을 시술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수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주택재개발 철거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부적정 하게 처리하고, 주택 철거과정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로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 및 배출한 경우로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환경오염 행위에 해당되어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됨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시 ○○구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구 조사결과, 피신고자에게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160만원 부과, 경고 처분
※ 통보일자 : 2012. 11. 8.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산업폐기물을 매립하는 사업을 하면서 유독성 폐기물을 매립하고 악취를 배출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환경오염 행위는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도 및 ○○지방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구 조사결과, 피신고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및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 받음
※ 통보일자 : 2012. 12. 3.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주물공장을 운영하면서 부산물을 공장부지내에 야적 방치하여 토양오염 및 유해물질 배출로 환경오염을 시키는 등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폐주물사를 적정하게 보관 하지 않고 대기방지시설의 부식 및 마모로 대기오염물질이 유출된 것은 환경관련법 위반의 환경오염 행위로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광역시 ○구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구 조사결과, 피신고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하고 경고처분
※ 통보일자 : 2012. 11. 21.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주택재개발 철거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부적정 하게 처리하고 현장 내 무단으로 방치하여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 및 배출한 경우로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의 환경오염 행위에 해당되어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됨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시 ○○구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구 조사결과 혐의 없음
- ※ 통보일자 : 2012. 12. 11.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돼지를 사육하면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인근 농수로에 유출하여 악취 유발 및 수질을 오염시켜 주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등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돼지를 사육하면서 발생된 가축분뇨를 인근 농수로로 유출하여 악취를 발생시키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의 환경오염 행위는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시 ○○군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군 조사결과, 피신고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고발
※ 통보일자 : 2012. 12. 31.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피신고자의 편육류 제품에서 식중독균 및 대장균이 검출되어 충청남도 천안시로부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 명령을 받았음에도 동 명령을 위반하여 품목류 제조정지기간 중에 편육류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가 피신고자의 편육류 제품에서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어 받은 품목류제조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제조정지기간 중 식육가공품을 제조한 개연성이 상당하여 관할 감독기관의 조사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필요함

3. 의결결과

○○도 ○○시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6,360만 원 부과 및 수사의뢰(축산식품과 특별사법경찰팀)
※ 통보일자 : 2012. 12. 26.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 사내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면서,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시설의 설치 없이 보관함으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건설폐기물 보관관리기준위반으로 주변 환경오염을 유발한 행위는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됨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혐의 없음
- ※ 통보일자 : 2012. 12. 28.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대기 자동측정 장치 불법 조작으로 대기오염 등 환경을 오염시킨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대기 측정기기를 임의로 조작한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경찰서 및 ○○도 이첩

❖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 중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피신고자 B 및 C를 포함한 다수의 성명불상 덤프트럭 운전자들과 공모하여 2009. 12.경부터 2011. 6.경까지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등유 및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하였으며,
- 피신고자 B 및 C는 2011. 1.경부터 2011. 6.경까지 피신고자 A로부터 보일러등유 및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공급받아 사용하는 등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등유 및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 및 사용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의 필요성과 관할 감독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의 필요성이 있음

3. 의결결과

경찰청, ○○도 ○○군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 A가 굴삭기와 덤프트럭 연료로 보일러등유 44,915리터(금액 53,001,090원)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 처분
※ 통보일자 : 2012. 1. 31.
- ○○군 조사결과, 피신고자A에게 과징금 2,000만원, B에게 과태료1,000만원, C에게 과태료 1,000만원 처분
※ 통보일자 : 2012. 3. 27.

제4장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구조

❖ 공익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자 보상 · 구조



공익신고자 보호

1. 의안개요

-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호텔업체 등 8개 업체의 원산지허위표시 상품 판매 등의 의혹을 공익 신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송부함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 업체들에게 처리결과 문서의 발송으로 인해 신청인의 신분이 노출되고 해당 문서가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됨으로써 화해권고결정 등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함과 더불어 향후 소송비용의 부담 및 관련업체 소문 등으로 사업재개가 불가능하게 되는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우리 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함

2. 심의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익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에 따라 행한 적법한 행위이고, 동 통지문서에는 신고자를 밝힌 내용도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거나 소송비용(항소) 부담, 관련업체 소문 등으로 사업재개불가 등 예상되는 불이익은 신청인 개인의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6호 각목에서 규정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향후 이를 받을 것이 명백한 불이익조치가 있음이 확인되지 않음

3. 결정결과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각 기각

1. 의안개요

- 신청인 등이 ○○도 ○○군 소재 농장주의 가축분뇨 불법배출 등을 해당 군청에 진정을 제기 하자, 위 농장주가 신청인 등의 불법건축물 관련 역민원을 제기하고 군청에서는 신청인 등에게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으로 농장주에게 회신하여, 신청인 등은 관할 검찰청에 위 농장주 및 해당 군청 공무원을 고발함
- 이에 군청에서 신청인 등에게 불법 건축물의 원상회복조치와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보함에 따라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이에 대한 금지를 신청함

2. 심의내용

- 신청인 등에 대한 불법 건축물의 원상회복조치 및 불이행 시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아니고 이미 행하여진 불법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이며, 사건의 전후관계에 비추어 신청인 등이 제기한 공익신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

3. 결정결과

기각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산업기능요원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지정업체의 “불법 방사선 피폭 작업 환경”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감독 관청인 ‘병무청’에도 동일 내용의 신고를 한 결과 「병역법」 위반으로 ‘의무중사기간 440일 연장처분’을 받음
- 신청인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처분’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제1항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동 처분을 취소,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보호조치 요청과 함께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의 감경·면제’ 규정에 따라 책임을 감면하여 줄 것을 요청

2. 심의내용

- 보호조치 요청에 대해 지방병무청장의 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의 “불이익 조치”의 해당 여부 검토 결과, 정당한 법집행으로 불이익 조치에 해당되지 않음
- 책임감면 요청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를 원용하여 감경처분을 권고함

3. 결정결과

보호조치 요청에 대해 “기각”, 책임감면 요청에 대해 “감경 처분 권고”

공익신고자 보상·구조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판매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는 바, 위 신고로 피신고자들이 과징금과 벌금을 납부하는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왔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금액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상환금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인 ○○약국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약사법 위반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약국 과징금 4,500,000원, 약사 벌금 1,000,000원, 종업원 벌금 1,000,000원 부과·납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며, 위 수입의 회복·증대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상환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결정결과

금 1,300,000원의 보상금 지급 및 지방자치단체 900,000원 상환 결정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판매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는 바, 위 신고로 피신고자들이 과징금과 벌금을 납부하는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왔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금액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상환금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인 ○○약국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약사법 위반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약국 과징금 5,700,000원, 약사 벌금 1,000,000원, 종업원 벌금 1,000,000원 부과·납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며, 위 수입의 회복·증대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상환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결정결과

금 1,540,000원의 보상금 지급 및 지방자치단체 1,140,000원 상환 결정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판매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는 바, 위 신고로 피신고자들이 과징금과 벌금을 납부하는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왔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금액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상환금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인 ○○약국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약사법 위반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약국 과징금 5,700,000원, 약사 벌금 1,000,000원, 종업원 벌금 3,000,000원 부과·납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며, 위 수입의 회복·증대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상환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결정결과

금 1,940,000원의 보상금 지급 및 지방자치단체 1,140,000원 상환 결정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판매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는 바, 위 신고로 피신고자들이 과징금과 벌금을 납부하는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왔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금액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상환금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인 ○○약국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약사법 위반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약국 과징금 5,700,000원, 약사 벌금 500,000원, 종업원 벌금 500,000원 부과·납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며, 위 수입의 회복·증대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상환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결정결과

금 1,340,000원의 보상금 지급 및 지방자치단체 1,140,000원 상환 결정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판매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신고로 피신고자가 벌금을 납부하는 등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왔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인 ○○약국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약사법 위반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종업원 벌금 1,000,000원 부과·납부로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며, 위 수입의 회복·증대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결정결과

금 20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건을 ○○시 보건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신고로 피신고자가 벌금을 납부하는 등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왔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인 ○○미용업소 운영자가 불법 문신시술 등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시 보건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 벌금 4,000,000원 부과·납부로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며, 위 수입의 회복·증대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결정결과

금 80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보일러 등유의 덤프트럭 연료용 판매·사용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신고로 피신고자들이 과징금, 과태료, 벌금을 납부하는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왔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26조,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금액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상환금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들이 공모하여 보일러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용으로 판매·사용하는 등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주유소 과징금 20,000,000원, 덤프트럭 소유자 A 과태료 10,000,000원, 덤프트럭 소유자 B 과태료 8,000,000원, 주유소 사장 벌금 10,000,000원 부과·납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며, 위 수입의 회복·증대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상환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결정결과

금 9,600,000원의 보상금 지급 및 지방자치단체 7,600,000원 상환 결정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는 바, 위 신고로 피신고자들이 벌금을 납부하는 등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왔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금액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상환금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인 ○○약국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약사법 위반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약사 벌금 3,000,000원, 종업원 벌금 3,000,000원 부과·납부로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며, 위 수입의 회복·증대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결정결과

금 1,20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신고로 피신고자들이 과징금과 벌금을 납부하는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왔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금액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상환금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인 ○○약국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약사법 위반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약국 과징금 5,700,000원, 약사 벌금 700,000원, 종업원 벌금 500,000원 부과·납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며, 위 수입의 회복·증대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상환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결정결과

금 1,380,000원의 보상금 지급 및 지방자치단체 1,140,000원 상환 결정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혹」건을 ○○시 보건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신고로 피신고자들이 과징금과 벌금을 납부하는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왔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금액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상환금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인 ○○약국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약사법 위반으로 ○○시 보건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약국 과징금 5,700,000원, 약사 벌금 500,000원, 종업원 벌금 500,000원 부과·납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며, 위 수입의 회복·증대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상환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결정결과

금 1,340,000원의 보상금 지급 및 지방자치단체 1,140,000원 상환 결정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혹」건을 ○○구 보건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신고로 피신고자들이 과징금과 벌금을 납부하는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왔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금액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상환금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인 ○○약국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약사법 위반으로 ○○구 보건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약국 과징금 5,700,000원, 약사 벌금 5,000,000원, 종업원 벌금 1,000,000원 부과·납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며, 위 수입의 회복·증대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상환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결정결과

금 2,340,000원의 보상금 지급 및 지방자치단체 1,140,000원 상환 결정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의혹」건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는 바, 위 신고로 피신고자가 벌금을 납부하는 등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왔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인 ○○음식점 운영자가 식자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 벌금 700,000원 부과·납부로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며, 위 수입의 회복·증대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 신청인이 동일 신고로 이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개별 법령에 따라, 100,000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

3. 결정결과

금 4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의혹」건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신고로 피신고자가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왔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인 ○○음식점 운영자가 식자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등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 과태료 800,000원 부과·납부로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며, 위 수입의 회복·증대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 신청인이 동일 신고로 이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개별 법령에 따라, 50,000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

3. 결정결과

금 11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의혹」건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신고로 피신고자가 벌금을 납부하는 등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왔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인 ○○음식점 운영자가 식자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등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 벌금 2,000,000원 부과·납부로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며, 위 수입의 회복·증대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신청인이 동일 신고로 이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개별 법령에 따라, 300,000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

3. 결정결과

금 10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의혹」건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신고로 피신고자가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왔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인 ○○웨딩 식당 운영자가 식자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등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 과태료 800,000원 부과·납부로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며, 위 수입의 회복·증대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신청인이 동일 신고로 이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개별 법령에 따라, 50,000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

3. 결정결과

금 11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의혹」건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신고로 피신고자가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왔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인 ○○음식점 운영자가 식자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등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 과태료 2,400,000원 부과·납부로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며, 위 수입의 회복·증대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신청인이 동일 신고로 이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개별 법령에 따라, 50,000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

3. 결정결과

금 43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의혹」건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신고로 피신고자가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왔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금액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상환금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인 ○○음식점 운영자가 식자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등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 과태료 800,000원 부과·납부로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며, 위 수입의 회복·증대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신청인이 동일 신고로 이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개별 법령에 따라, 50,000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

3. 결정결과

금 11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의혹」건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신고로 피신고자가 벌금을 납부하는 등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왔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금액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상환금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인 ○○음식점 운영자가 식자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 벌금 5,000,000원 부과·납부로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며, 위 수입의 회복·증대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신청인이 동일 신고로 이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개별 법령에 따라, 300,000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

3. 결정결과

금 70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의혹」건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신고로 피신고자가 벌금을 납부하는 등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왔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금액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상환금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인 ○○음식점 운영자가 식자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 벌금 2,000,000원 부과·납부로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며, 위 수입의 회복·증대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신청인이 동일 신고로 이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개별 법령에 따라, 100,000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

3. 결정결과

금 30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미등록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신고로 피신고자가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왔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금액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상환금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인 ○○청소년수련원 운영자가 등록된 건물 이외의 미등록 건물을 활용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청소년 활동 진흥법 위반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 과태료 2,000,000원 부과·납부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며, 위 수입의 회복·증대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상환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결정결과

금 400,000원의 보상금 지급 및 지방자치단체 400,000원 상환 결정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소홀」건을 ○○시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신고로 피신고자가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왔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금액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상환금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인 ○○건설업체 대표가 건설 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대기환경을 침해하는 행위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시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 과태료 960,000원 부과·납부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며, 위 수입의 회복·증대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상환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결정결과

금 192,000원의 보상금 지급 및 지방자치단체 192,000원 상환 결정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건을 ○○구 보건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신고로 피신고자가 벌금을 납부하는 등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왔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인 ○○미용업소 운영자가 불법 문신시술 등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구 보건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 벌금 4,000,000원 부과·납부로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며, 위 수입의 회복·증대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결정결과

금 80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건을 ○○구 보건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신고로 피신고자가 벌금을 납부하는 등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왔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인 ○○미용업소 운영자가 불법 문신시술 등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구 보건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 벌금 3,000,000원 부과·납부로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며, 위 수입의 회복·증대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결정결과

금 60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건을 ○○구 보건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신고로 피신고자가 벌금을 납부하는 등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왔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인 ○○미용업소 운영자가 불법 문신시술 등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구 보건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 벌금 1,000,000원 부과·납부로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며, 위 수입의 회복·증대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결정결과

금 20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건을 ○○시 보건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신고로 피신고자가 벌금을 납부하는 등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왔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인 ○○미용업소 운영자가 불법 문신시술 등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시 보건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 벌금 1,000,000원 부과·납부로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며, 위 수입의 회복·증대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신청인이 동일 신고로 이미 보건복지부로부터 개별법령에 따라, 100,000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

3. 결정결과

금 10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건을 ○○시 보건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신고로 피신고자가 벌금을 납부하는 등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왔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인 ○○미용업소 운영자가 불법 문신시술 등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시 보건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 벌금 1,000,000원 부과·납부로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며, 위 수입의 회복·증대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결정결과

금 20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건을 ○○시 보건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신고로 피신고자가 벌금을 납부하는 등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왔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인 ○○미용업소 운영자가 불법 문신시술 등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시 보건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 벌금 1,000,000원 부과·납부로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며, 위 수입의 회복·증대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결정결과

금 20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건을 ○○구 보건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신고로 피신고자가 벌금을 납부하는 등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왔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인 ○○미용업소 운영자가 불법 문신시술 등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구 보건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 벌금 1,000,000원 부과·납부로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며, 위 수입의 회복·증대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결정결과

금 20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건을 ○○시 보건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신고로 피신고자가 벌금을 납부하는 등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왔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인 ○○체형원 운영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체형 교정 불법 의료광고 행위 등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시 보건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 벌금 500,000원 부과·납부로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며, 위 수입의 회복·증대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결정결과

금 10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무신고 집단급식소 운영」건을 ○○구 보건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신고로 피신고자가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왔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 금액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상환금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인 ○○기숙학원 운영자가 집단급식소를 영업신고 없이 운영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구 보건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 과태료 800,000원 부과·납부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며, 위 수입의 회복·증대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상환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결정결과

금 160,000원의 보상금 지급 및 지방자치단체 160,000 상환 결정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무신고 식품제조가공 영업 행위」건을 ○○구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신고로 피신고자가 벌금을 납부하는 등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왔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인 ○○음식점 운영자가 영업신고 없이 인터넷으로 주문·판매를 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 벌금 1,500,000원 부과·납부로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며, 위 수입의 회복·증대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결정결과

금 30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무신고 식품제조가공 영업 행위」건을 ○○시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신고로 피신고자가 벌금을 납부하는 등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왔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인 ○○음식점 운영자가 신고 없이 영업행위를 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 벌금 700,000원 부과·납부로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며, 위 수입의 회복·증대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결정결과

금 14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산업기능요원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지정업체의 “불법 방사선 피폭 작업 환경”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지정업체의 감독 관청인 ‘병무청’에도 동일 내용의 신고를 한 결과 「병역법」 위반으로 ‘의무종사기간 440일 연장 처분’을 받고 이와 관련 공익신고자 자신의 신경정신과 병원 상담·진료비(79,000원)에 대해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
- 위 신청과 관련, 개최된 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정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었던 점에서 신청인의 공익신고 행위가 있었고, 신청인이 동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자신의 「병역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정신적 압박감과 실제로 공익신고 이후 관할 지방병무청의 조사과정 및 그 결과 ‘의무종사기간 440일 연장’ 처분 조치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이 신청한 신경정신과 3회의 상담·진료비 79,000원 전체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의 “공익신고등으로 인한 피해 또는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 지급하기로 결정

2. 심의내용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3. 결정결과

- 금 79,000원의 구조금을 지급

제5장 예규개정 등 의결사항

- 행동강령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업무지침 제정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 부패행위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자 제재
- 

1. 의안개요

- 각급 공공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의 내실화, 공직자의 행동강령 준수 강화 등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점검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을 준용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조사·점검업무의 명확성, 적정성 등을 확보함은 물론, 청렴한 공직문화의 확립을 위하여 조사·점검업무의 운영지침을 조속히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음

2. 심의내용

- 제2장 점검의 실시(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 제3장 점검결과의 처리(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제4장 점검 공무원의 자세 등(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 중복문구 수정 : 제15조 제2항과 제3항의 문구 중복성 해소

3. 의결결과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업무지침 제정안 수정 의결
(중복문구 수정)

1. 의안개요

- 관련법령인 「국가공무원법」이 2008. 12. 31. 개정·시행되고, 2009. 3. 18. 「공무원 징계령」이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09. 4. 1. 시행됨
- 이에 따라 별표 2(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의 징계종류에 ‘강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는 등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함

2. 심의내용

- 금전의 차용금지 등(안 제14조)
- 징계양정기준(안 제23조)
- 행동강령 운영실적 제출(안 제25조)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안 제26조)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별표 1)
-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별표 2)

3. 의결결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의결

1. 의안개요

- 부패신고자 보호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과태료 미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보호규정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자발적으로 시정하고, 요구인이 위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신고자 보호취지)
 - 보호규정 위반행위가 요구인의 주된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자발적으로 시정한 경우

2. 심의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30조)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안 제31조)

3. 의결결과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개정안 의결

1. 의안개요

- 신고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비용산정 기준 및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시기 관련규정을 보다 구체화 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 업무수행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함

2. 심의내용

- 신고 불이익처분 원상회복 비용산정 기준 개정(안 제12조제3항)
- 보상금 지급결정일 산정방법 명시(안 제38조제3항)
- 보상금의 지급시기 구체화(안 제42조제2항)
-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명시(안 제44조)

3. 의결결과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보상사무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의결

1. 의안개요

- 운영지침 일부개정을 통해 적정수준의 보상금 예산 편성 및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보상금 결정 재심절차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보상금 지급 재심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

2. 심의내용

- 보상금 결정 재심절차 개정(안 제39조의 2 신설)
 - 재심의 주체로 특별소위원회 설치 운영근거 마련
- 보상사건 일제정비 실시 근거 마련(안 제45조의 2 신설)

3. 의결결과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보상사무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의결

1. 의안개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는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 등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위면직자인 A가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A가 ○○교도소 교도관으로 재직하면서 수용자인 B와 C에게 부정 물품인 껌, 염색약 등을 제공하고, C의 처에게 부정연락을 해준 사례금으로 100만원을 받은 행위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행위이며 그 대가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한 점이 인정되므로 부패행위에 해당됨
- A는 이러한 부패행위로 해임되었으므로 권익위법 제82조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되어 5년간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퇴직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공공기관에 취업함

3. 의결결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A의 해임을 요구하고, A를 고발하여야 한다고 통보

1. 의안개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는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 등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위면직자인 A가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A가 ○○진흥원의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사례비를 외상값 및 식대 비용으로 대납하게 하거나 상품권을 받은 행위는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행위이며 그 대가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점이 인정되므로 부패행위에 해당됨
- A는 이러한 부패행위로 해임되었으므로 권익위법 제82조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되어 5년간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퇴직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공공기관에 취업함

3. 의결결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A의 해임을 요구하고, A를 고발하여야 한다고 통보

제6장 기 타

- 전원위원회 보고목록
- 전원위원회 위원명단
-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명단
- 부패신고 및 공익침해신고 안내



전원위원회 보고목록

제1차 전원위원회 2012. 01. 16.

의안번호	보 고 사 항	소 관
제2012-2호	모타카 운전 및 철도장비 운영업무 위탁 용역비 부담 수령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3호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정부출연금 부담편취 의 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4호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보조금 횡령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5호	○○부 부품소재 기술개발 사업비 횡령 등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6호	철도안전법 위반(KTX열차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심사정책과
제2012-7호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 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2012-8호	○○공단 하수관거정비 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 등 이 첩 · 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제2차 전원위원회 2012. 02. 20.

의안번호	보 고 사 항	소 관
제2012-14호	누룽지기계 제조 · 설치 관련 공사비 부담편취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15호	체육회 관계자의 유도대회 지원금 횡령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16호	국책과제 정부지원금 횡령 및 편취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17호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분과위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2012-18호	산업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 횡령 의혹 등 이첩 · 송 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19호	보일러등유 및 등유의 자동차 연료 판매와 사용 의혹이 첩 · 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공익심사정책과

제3차 전원위원회 2012. 03. 19.

의안번호	보 고 사 항	소 관
제2012-37호	‘○○젓갈 명산품 육성사업’사업비 편취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38호	조달물품 납품관련 부패행위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39호	체육교사 금품수수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행동강령과
제2012-40호	연구원 호봉회정 비리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행동강령과
제2012-41호	사업용 차량에 구형 운행기록계 장착 ·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2012-42호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분과위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2012-43호	○○공무원의 탈세 목인 관련 뇌물수수 의혹 등 이첩 · 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제4차 전원위원회 2012. 04. 16.

의안번호	보 고 사 항	소 관
제2012-47호	하천정비 공사비 부당 편취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48호	외국인 선원 송 · 출입 업무 관련 비리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49호	국유지 불법취득에 의한 국가예산 손실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50호	사업자단체의 불공정 행위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심사정책과
제2012-51호	무자격자의 한방의료 행위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2012-52호	무자격자 한방의료 행위 등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2012-53호	KTX열차의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의혹관련 보호조치 신청 이행처리 결과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2012-54호	하천개수 공사비 부당 편취 의혹 등 이첩 · 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55호	철도교량 하부보강 부실시공 의혹 등 이첩 · 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공익심사정책과
제2012-56호	무면허 의약품 조제 의혹 등 이첩 · 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5차 전원위원회 2012. 05. 21.

의안번호	보 고 사 항	소 관
제2012-66호	치과의사 진료 거부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2012-67호	무자격자 레이저 피부 시술 의혹 등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2012-68호	무허가 철거업체의 건설 폐기물의 불법 매립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2012-69호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2012-70호	하천부지 무단점용에 따른 공공기관 재산손실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71호	임목폐기물 운송중량 조작, 처리비용 편취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72호	경찰관 직권남용 감금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73호	허위등록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74호	영화제협 마을사업비 등 보조금 편취 의혹 등 이첩 · 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75호	인구주택 총조사 출장여비 횡령 의혹 이첩 · 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행동강령과

제6차 전원위원회 2012. 06. 18.

의안번호	보 고 사 항	소 관
제2012-94호	부패신고자 보호조치 요구에 대한 관련기관 조치결과 보고	보호호상과
제2012-95호	미등록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2012-96호	유해식품 판매 행위 의혹 등 분과위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2012-97호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부당청구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98호	요양병원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등 부당청구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99호	무자격자 초음파 등 진료행위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2012-100호	군용물품 무단폐기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101호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부정수급 의혹 등 이첩 · 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제7차 전원위원회 2012. 07. 16.

의안번호	보 고 사 항	소 관
제2012-107호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 위장 전입 비리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108호	식품 유통기한 변조 의혹 등 분과위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2012-109호	한 의사 보톡스 시술 행위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2012-110호	열차부품 납품 관련 공공기관 예산편취 등 의혹 이첩 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111호	체육교사 금품수수 의혹 등 이첩 · 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행동강령과
제2012-112호	무자격자 눈썹 문신 시술 의혹 등 이첩 · 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8차 전원위원회 2012. 08. 27.

의안번호	보 고 사 항	소 관
제2012-130호	우면산 산사태 공사비용 부당청구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131호	○ ○ 연구원 팀장의 법인카드 부당집행 부패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132호	○ ○ 대학교 예산낭비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133호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출연금 편취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134호	굴 패각 등 폐기물 해양 무단배출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2012-135호	무자격자 레이저 프락셀 등 피부 시술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2012-136호	영어체험마을 사업 관련 예산손실 및 특혜 의혹 등 이첩 · 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137호	○ ○ 교육원장의 간접비 부당집행 의혹 등 이첩 · 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행동강령과

제9차 전원위원회 2012. 09. 24.

의안번호	보 고 사 항	소 관
제2012-156호	장애인 고용장려금 편취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157호	군부대 도로포장공사 골재비 편취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의안번호	보 고 사 항	소 관
제2012-158호	식품업체의 특정거래처 부당지원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심사정책과
제2012-159호	약초의 식품 등의 원료로 불법 제조 판매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2012-160호	이러폰 관련 제품 허위특허 광고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2012-161호	자치단체 민간투자 사업자의 공공예산 낭비 의혹 등 이첩 · 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162호	군부대 공용물품 사적사용 의혹 등 이첩 · 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행동강령과

제10차 전원위원회 2012. 10. 22.

의안번호	보 고 사 항	소 관
제2012-178호	국립대학교 교수채용 비리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179호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 편취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180호	수질오염 및 비산먼지 공해신고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2012-181호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환경 공해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2012-182호	병원과 약국의 담합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2012-183호	허위등록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 등 이첩 · 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184호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의혹 등 이첩 · 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11차 전원위원회 2012. 11. 19.

의안번호	보 고 사 항	소 관
제2012-200호	지방자치단체 민간자본 유치사업 관련 비리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201호	○○부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비’ 편취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202호	교육청 공무원의 예산 횡령 의혹 등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203호	폐수오염 및 비산먼지 오염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의안번호	보 고 사 항	소 관
제2012-204호	건설현장 폐기물 불법처리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2012-205호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공무원의 알선수뢰 의혹 등 이첩 · 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206호	연구원 호봉획정 비리 의혹 등 이첩 · 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행동강령과
제2012-207호	이러폰 관련 부품 허위 특허 광고 등이첩 · 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12차 전원위원회 2012. 12. 03.

의안번호	보 고 사 항	소 관
제2012-215호	식품류 제조정지 명령 위반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심사정책과
제2012-216호	산업폐기물 매립장 불법 매립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2012-217호	주물공장 대기오염 및 유해물질 배출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13차 전원위원회 2012. 12. 17.

의안번호	보 고 사 항	소 관
제2012-278호	비영리 사회단체(모범운전자회) 보조금 횡령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279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280호	지방이전기업 유치 관련 정부지원금 편취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281호	○○○여성합창단 보조금 횡령 의혹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282호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283호	임목폐기물 중량 조작, 운송비용 편취 의혹 등 이첩 · 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2-284호	지자체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의혹 이첩 · 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행동강령과
제2012-285호	무허가 철거업체의 건설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등 이첩 · 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전원위원회 위원 명단

2012. 12월말

직 위	성 명	주 유 경 력	비 고
위원장	이성보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서울동부지방법원장 · 청주지방법원장	
위 원	박재영	· 대통령실 행정자치비서관 ·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삼임위원 ·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부위원장 (사무처장)
위 원	최현복	· 대구 홍사단 사무총장 · 반부패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맑고푸른대구21 추진협의회장	부위원장
위 원	홍성칠	· 법무법인 로직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장 · 서울고등법원 판사	부위원장
위 원	정기창	·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 청렴위 제도개선단장	상임위원
위 원	신영기	· 국무총리실 총무비서관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실 · 규제개혁정책관	상임위원
위 원	정현율	·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	상임위원
위 원	황현주	· (현)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위 원	이순창	· (현)서울 연신교회 담임목사 · (현)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	
위 원	김용미	· (현)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현)새건축사협의회 부회장	
위 원	문한식	· (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현)행정안전부 법률고문 변호사	
위 원	이원일	· 서울고법 부장판사 · (현)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위 원	이희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위 원	이영구	· 법무법인 세종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 원	유재풍	· 법무법인 청주로 대표변호사 · 청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2012. 12월말

구 분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위원장	최현복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당연직
위 원	곽형석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	당연직
위 원	황인규	· 변호사	위촉직 (법률전문가)
위 원	김금순	· 공인회계사	위촉직 (회계전문가)
위 원	장현범	· 감정평가사	위촉직 (감정평가전문가)
위 원	김창준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장	위촉직 (비영리민간단체)
위 원	양철웅	· 변호사	위촉직 (법률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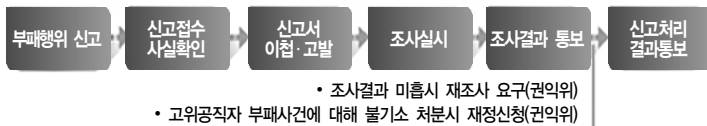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안내

공직자의 부패행위, 깨끗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부패행위 신고

부패신고 접수와 처리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60일 이내(30일 이내 연장 가능)에 확인절차를 거쳐 조사기관에 의뢰, 결과를 통보받아 알려 드립니다.



부패행위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및 이행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행동강령 위반신고

국민 누구나 공직자가 공직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행동강령 위반사항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의 수수
- 공용물(관용 차량, 선박 등) / 재산의 사적사용·수익
- 직무관련자에 대한 경조사 통지 및 기준을 초과한 경조금품 수수
- 기타 예산의 목적의 사용, 알선·청탁, 이권개입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전반



부패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는 청렴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의롭고 용기있는 행동입니다.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고 보상금 지급

부패행위를 위원회에 신고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을 최고 20억원까지 지급합니다.

공익신고안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 1398

공익신고자 보호

당신의 양심에 안심을 더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11.9.30.시행)

● '공익침해행위'는 어떤것인가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180개 법률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이곳에 하세요.

- ① 공익침해행위 기업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② 소관 행정·감독기관
- ③ 수사기관
- ④ 국민권익위원회
- ⑤ 국회의원
- ⑥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집행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공공단체

● 공익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않습니다.

보호 조치	신분비밀 보장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보도하는 행위 금지
	신변보호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조치

●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 ☛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 공익신고로 치료·이사·쟁송·임금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 ☛ 구조금 지급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처벌 됩니다.

제재 유형		위반 유형
징 계 처 벌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보도 - 불이익 조치를 한 자
벌 칙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보도 - 신고내용을 공개한 조사기관 종사자
	2년이하 징역 또는 2만원 이하 벌금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한 자 -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
	1년이하 징역 또는 1만원 이하 벌금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게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조치를 한 자 -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보호는 이렇게 해요!

-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B는 수입 금지된 사료용 대구머리 등 수산물을 식용 대구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국내에 수입한 후 전국 백화점, 대형 마트 음식점 등에 10년간 판매하여 수입 억원의 부당이익을 치하였다.
- 이에 직원 A는 우연히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급자 C에게 상의하였으나 조치가 없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하였다.
- A의 신고로 인하여 조사가 시작되자 B는 공익신고자로 추정되는 A에게 신고를 취소하라고 협박하였으나, A가 이를 거부하자 해고하였다.

Tip B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추징금 20억5,0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 A의 신고 내용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까요?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인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해당

※ 「식품위생법」 제94조수입이 금지된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A는 어디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수입업체 대표B, 관할 시·군·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해고당한 A는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복직



● A는 보상금이나 구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결로 추징금 20억원 5,000만원이 확정되었으므로 2억 2,900만원까지의 보상금과 신고로 치료비·이사비·임금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 지급 가능



● A를 해고한 B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B는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불이행하면 2년 이하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분야별
공익침해행위
사례

건강 분야

AIDS에 감염된 혈액유통

- 혈액관리기관의 잘못된 헌혈관리 및 혈액관리로 에이즈(AIDS)에 오염된 혈액을 유통시킨 행위 (혈액관리법 위반)

• 관련법류
의료법 등 45개



환경 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 공장에서 배출된 매립이 금지된 화학물질이 함유된 폐기물 수천톤을 농지에 불법매립한행위(폐기물관리법 위반)

• 관련법류
자연환경보전법 등
50개



안전 분야

폭발위험 냉매가스 판매

- 폭발위험이 있는 가짜 자동차 에어컨 냉매가스를 무허가로 수입하여 자동차 공업사에 납품하는 행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 관련법류
시설물의 안전관리법
특별법 등 56개



소비자 이익 분야

가짜 참기름 유통

- 중국산 참기름과 식용유를 혼합해 만든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유통한 행위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 관련법류
소비자기본법 등 24개



공정 경쟁 분야

LPG 담합

- 정유회사가 6년간 LPG 가격을 담합한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 관련법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이 용 안 내

- 방 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군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종합민원상담센터)
- 우 편** | (120-705)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군동 257)
임광빌딩 신관 국민권익위원회
- 전 화** | 부패행위 신고전화 1398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팩 스** | 부패·공익신고 02)360-3551
고충민원 02)360-3531
- 인 터 넷** | 부패·공익신고 www.acrc.go.kr
고충민원 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2012년도 부패·공익침해 방지 심의·의결례집(제11집)

발행처 :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성보

발행일 : 2013년 5월

편 집 : 삼원 02) 2277-3003

인 쇄 : 사)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Tel.1577-3342

본 부패·공익침해 방지 심의·의결례집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 02)360-6665 Fax:02) 360-3550

